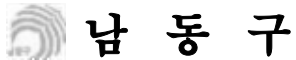


남동구의회 제출의안



목 차

[기 의 액 정 위 원 회]

■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과)		7
■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기획예산과)		15
■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		19
■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		31
■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1과)		61
■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총괄과)		87

【 복 지 건 설 위 원 회 】

■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97
■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정책과)	117
■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133
■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정책과)	149
■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아동복지과)	157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육정책과)	173
■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원녹지과)	181

■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	189
--	-----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	199
---	-----

■ 구월34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재생과)	213
--	-----

■ 만수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 (도시재생과)	243
--	-----

[기 의 행 정 위 원 회]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7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상 원고(민원인 등)로부터 구 또는 공무원이 피소된 경우에만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제한적인 상황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 또는 공무원이 제소 등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 처리 담당 공무원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8조제1항 단서 조항 신설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민원 처리 담당자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①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구청장이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8조(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① ----- ----- ----- ----- ----- ----- 단, 민원 처리 담당자의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정책기획국 기획예산과장 방종원

[참고자료]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①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민원 처리 담당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① 생략
-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과 담당자 간에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등 소송 수행이나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④ 생략

2026년도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26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안 번호	3248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1. 제출사유

-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지방채의 발행)에 따라 2026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방채 발행계획 : 총 2건, 6,650백만원
 - 자금선 : 공공자금관리기금
 - 차입선 : 기획재정부
 - 이 율 : 3.435% (2026년 2분기 기준)
 - 상환기간 : 5년거치 10년상환

사업명	발 행 계획액	차입선	발행조건		
			이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2건	66.5억원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	44.7억원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3.435%	5년거치 10년상환	구비
노후불량 허수관로 정비사업(1차)	21.8억원				

3.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1호
 -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건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재정수요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9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용어 정비 및 위원회의 위원 사항을 정비하고, 중소기업 융자금 대출 완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비 및 위원회의 위원 사항 정비
: (안 제1조 및 제9조제3항, 제9조제6항)
- 융자대상자 선정 후 대출기한 및 연장기한 근거 조항 신설
: (안 제17조제2항)
- 대출기한 및 연장기한 내 미대출 시 선정 통보 실효 근거 조항 신설
: (안 제17조제3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9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
-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를 “남동구”로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국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가목부터 바목”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업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 가. 남동구의회의 의원 1명
 - 나. 구금고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 다. 신용보증기금 남동구 관할 지점장
 - 라. 기술보증기금 남동구 관할 지점장
 - 마.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이 지정한 사람
 -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남동구 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남동구----- ----- ----- ----- ----- --.
제9조(설치 및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은 기업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구급고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1명	제9조(설치 및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담당 국장----- ----- ----- ----- ----- 1. 당연직 위원 : 기업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남동구의회 의원 1명 나. 구급고의 장이 지정하는

- ②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1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람 1명 다. 신용보증기금 남동구 관할 지점장 라. 기술보증기금 남동구 관할 지점장 마.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장이 지정한 사람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가목부터 바목----- ----- ⑦·⑧ (현행과 같음)
제17조(용자대상자 선정) (생략)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용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3. 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4. 기술신용보증기금남동지점장
5. 한국산업단지공단 경인지역본부 기업지원처장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람
④·⑤ (생략)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⑦·⑧ (생략)
제17조(용자대상자 선정) (생략)
<신 설>

<u><신 설></u>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1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대출수속이 진행 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선정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정책기획국 기업지원과장 김현수
--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중소기업에 영향을 주는 기존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둔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신설 2013. 8. 6.>
 1.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발굴 및 개선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소기업정책자금 운용기관(이하 “업무기관”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애로사항의 해결
 3. 그 밖에 규제의 정비 및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 및 규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추천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개정 2013. 8. 6., 2017. 7. 26., 2026. 2. 19.>
-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에 관한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와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6. 2. 19.>
- 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조사 및 의견청취, 법적지위 등에 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0조 및 제3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으로 본다. <개정 2013. 8. 6.>
-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22. 1. 4.>
-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6., 2022. 1. 4.>
- ⑧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처리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사무기구를 둔다. <신설 2013. 8. 6., 2017. 7. 26.>
- ⑨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 [본조신설 2008. 12. 26.]
- [제목개정 2013. 8. 6.]

□ 행정규제기본법

- 제17조(규제 정비의 요청)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고시(告示) 등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비 요청을 받으면 해당 규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자 실명으로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의 답변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규제 존치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을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존규제의 정비 요청, 답변·소명의 기한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8. 4. 17.]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구월2동(용천)행복마을 가꿈사업)】

의안 번호	3250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구월동 4-67번지, 4-113번지, 1243-8번지 부지매입 및 쉼터 조성을 통해 주민의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구월2동(용천) 행복마을 가꿈사업
- 사업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쉼터 조성
- 사업기간: 2023. ~ 2026.
- 사업예산: 3,300백만원(시비 3,000 / 구비 300)
-토지매입비 1,505백만원 공사비 550백만원 토지매입·공사비 외 1,245백만원
- 사업규모: A=441.9㎡, 쉼터 조성(3개소)
- 사 업 비: 33억원 (시 91 : 구9)
- 계약방법: 토지 매입(협의 매입), 공작물 설치(경쟁입찰)
- 취득 재산 기준가격 명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

취득재산 종류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기준가격 (천원)	예정가격 (천원)	소유자	비고
토지 건물	구월동 4-67	141.3	224.06	235,000	532,484	남동구	단독주택
토지 건물	구월동 4-113	130.9	126.04	202,000	437,116	남동구	단독주택
토지 건물	구월동 1243-8	169.7	66.76	259,000	535,142	남동구	단독주택
공작물 설치	구월동 4-67 외 2	441.9	-	550,000	-	남동구	쉼터조성
합 계				1,246,000	1,504,742		

□ 추진사항 및 계획

- 2025. 8.: 정비계획(안) 입안, 주민 공람·공고
- 2025. 9.: 주민설명회
- 2025.12.: 주민 (제)공람·공고
- 2026. 2.: 구의회 의견청취, 보상협의 및 보상금 지급
- 2026.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천시)
- 2026. 5.: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26. 6.: 쉼터조성 공사 시행
- 2026. 12.: 쉼터조성 공사 준공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2동(용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구월동 4-67번지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대	141.3	남동구청	2026. 2.	1,548
건 물	연 면 적	224.06㎡			
	구 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토지매입비	532,484천원				
총 건 축 비	550,000천원(3필지 포함)				
사 업 기 간	2023년 ~ 2026년				
[위 치 도]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2동(용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구월동 4-113번지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대	130.9	남동구청	2026. 2.	1,439
건 물	연 면 적	126.04㎡			
	구 조	벽돌조 슬래브 위 기와지붕			
토지매입비	437,116천원				
총 건 축 비	550,000천원(3필지 포함)				
사 업 기 간	2023년 ~ 2026년				
[위 치 도]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2동(용원)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구월동 1243-8번지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대	169.7	남동구청	2026. 2.	1,520
건 물	연 면 적	66.76㎡			
	구 조	연와조 세멘트와 지붕			
토지매입비	535,142천원				
총 건 축 비	550,000천원(3필지 포함)				
사 업 기 간	2023년 ~ 2026년				
[위 치 도]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구월2동(느티마루)행복마을 가꿈사업)】

의안
번호

3250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출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구월동 1248-36번지 일원 부지매입 및 쉼터 조성을 통해 주민의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구월2동(느티마루) 행복마을 가꿈사업

○ 사업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쉼터 조성

○ 사업위치: 구월동 1248-36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4. ~ 2026.

○ 사업예산: 3,300백만원(시비 3,000 / 구비 300)
-토지매입비 1,413백만원, 공사비 700백만원, 토지매입·공사비 외 1,187백만원

○ 사업규모: A=490.3㎡, 쉼터 조성(3개소)

○ 사 업 비: 33억원 (시 91 : 구9)

○ 계약방법: 토지 매입(협의 매입), 공작물 설치(경쟁입찰)

○ 취득 재산 기준가격 명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

취득재산 종류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기준가격 (천원)	예정가격 (천원)	소유자	비고
토지 건물	구월동 1248-36	163.4	246.36	245,800	468,900	남동구	공동주택
토지 건물	구월동 1248-60	163.5	247.36	245,800	470,364	남동구	공동주택
토지 건물	구월동 1248-61	163.4	247.36	245,800	473,567	남동구	공동주택
공작물 설치	구월동 1248-36 외 2	490.3	-	700,000	-	남동구	쉼터조성
합 계				1,437,400	1,412,831		

□ 추진사항 및 계획

○ 2026. 2: 정비계획(안) 입안

○ 2026. 2: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 2026. 4: 정비계획(안) 의회 의건청취, 보상시행

○ 2026. 6: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인철시)

○ 2026. 6: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26. 7: 쉼터조성 공사 시행

○ 2026.12: 쉼터조성 공사 준공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구월동 1248-36번지
토 지	지 목
	대 163.4
건 물	소 유 자
	남동구
	취득년월일
	2026. 5.
	대상가격
	1,413
연 면 적	
246.36㎡	
구 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토지매입비	
468,900천원	
총 건축비	
700,000천원(3필지 포함)	
사업기간	
2024년 ~ 2026년	
[위 치 도]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2동(느티마루)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구월동 1248-60번지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기적(㎡)
	대	163.5	남동구	2026. 5.	1,413
건 물	연 면 적	247.36㎡			
	구 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토지매입비	470,364천원				
총 건 축 비	700,000천원(3필지 포함)				
사 업 기 간	2024년 ~ 2026년				
[위 치 도]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구월2동(느티마루)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구월동 1248-61번지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기적(㎡)
	대	163.4	남동구	2026. 5.	1,413
건 물	연 면 적	247.36㎡			
	구 조	벽돌조 슬래브지붕			
토지매입비	473,567천원				
총 건 축 비	700,000천원(3필지 포함)				
사 업 기 간	2024년 ~ 2026년				
[위 치 도]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간석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의안 번호	3250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간석1동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통 및 공동체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간석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 사업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 사업위치: 간석동 508-72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4. ~ 2027.
- 사업예산: 3,300백만원(시비 3,000 / 구비 300)
 - 토지매입비 683백만원 용역 및 공사비 1,100백만원 토지매입·공사비 외 1,517백만원
- 사업규모: 13,307㎡
- 계약방법: 토지 매입(협의 매입), 공작물 설치(경쟁입찰)
- 취득 재산 기준가격 명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

취득재산 종류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기준가격 (천원)	예정가격 (천원)	소유자	비고
토지 건물	간석동 508-72	212	182.07	360,000	682,734	강○미	단독주택
건물	간석동 508-72	212	-	1,100,000	-	남동구	전물신축
합 계		212	182.07	1,460,000	682,734		

□ 추진계획

- 2026. 5.: 보상계획 알림 및 감정평가 의뢰
- 2026. 6.: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26. 7.: 구의회 의견 청취
- 2026. 9.: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26. 10.: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26. 하반기 ~ 2027: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추진계획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간석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남동구 간석동 508-72번지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가격천원
	대	212	강○미	2021.03.	1,594
건 물	연 면 적	182.07㎡(※건물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토지매입비	682,734천원(※탁상감정가로 가격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총 건 축 비	1,100,000천원(추정)				
사 업 기 간	2024년 ~ 2027년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간석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의안 번호	3250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행복마을 가꿈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소통 및 공동체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간석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 사업목적: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공동이용시설·쉼터 조성
- 사업위치: 간석동 6-25번지 일원
- 사업기간: 2024. ~ 2027.
- 사업예산: 3,300백만원(시비 3,000 / 구비 300)
 - 토지매입비 1,021백만원, 용역 및 공사비 1,070백만원,
 - 토지매입·공사비 외 1,209백만원
- 사업규모: 16,970㎡
- 사 업 비 : 33억원 (시 91 : 구9)
- 계약방법 : 토지 매입(협의 매입), 공작물 설치(경쟁입찰)
- 취득 재산 기준가격 명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

취득재산 종류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기준가격 (천원)	예정가격 (천원)	소유자	비고
토지 건물	간석동 61-6	154.9	158.64	383,582	441,448	김○열	단독주택
토지 건물	간석동 6-25	187	196.925	325,698	579,032	조○훈	상가주택
건물	간석동 61-6 외 1	341.9		1,070,000	-	남동구	건물신축, 쉼터조성
합 계				1,779,280	1,020,480		

□ 추진계획

- 2026. 5.: 보상계획 알림 및 감정평가 의뢰
 - 2026. 6.: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보상 시행
 - 2026. 7.: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26. 하반기 ~ 2027: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 추진계획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간석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남동구 간석동 61-6번지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기권년월일
	대 154.9 김○열 2006.08. 1,282
건 물	연 면 적 158.64㎡(※건물 철거 후 헛터조성)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토지매입비	441,448천원(※탁상감정가로 가격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총 건 축 비	200,000천원(추정)
사 업 기 간	2024년 ~ 2027년
[위치 도]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간석3동 행복마을 가꿈사업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남동구 간석동 6-25번지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기권년월일
	대 187 조○훈 2018.12. 1,626
건 물	연 면 적 196.925㎡(※건물 철거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토지매입비	579,032천원(※탁상감정가로 가격변동사항 있을 수 있음)
총 건 축 비	870,000천원(추정)
사 업 기 간	2024년 ~ 2027년
[위치 도]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남동 온세대 건강문화센터 조성)】

의안번호

3250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출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간석3동 뉴빌리지 사업」의 일환으로 구역 내 주민 편의를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남동 온세대 건강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남동 온세대 건강문화센터 조성사업

○ 사업목적: 기존 노후화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확충 이전 및 문화·주차공간 조성

○ 사업위치: 간석동 86-2, 87-5, 87-6

○ 사업기간: 2025. ~ 2028.

○ 사업예산: 17,834백만원

- 토지매입비 1,552백만원, 용역 및 공사비 16,134백만원, 토지매입·공사비 외 148백만원

○ 사업규모: (연면적) 3,612.7㎡, (층별) 지하1층, 지상4층

○ 사 업 비 : 17,834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계약방법: 토지 매입(협의 매입), 건물신축(경쟁입찰)

○ 취득 재산 기준가격 명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

취득재산종류	소재지	토지면적(㎡)	건물연면적(㎡)	*기준가격(천원)	예정가격(천원)	소유자	비고
토지	간석동 87-5	205.6	320.12	291,000	733,043	남동구	단독주택
토지	간석동 87-6	244	329.73	341,000	819,130	남동구	단독주택
소 계		449.6	649.85	632,000	1,552,173		
건물	간석동 87-5 외 2필지	1,362.3 (기확보 포함)	3,612.7	16,134,000	-	남동구	건물신축
총 계		1,362.3	4262.55	16,766,000	1,552,173		

□ 추진사항 및 계획

○ 2026. 3.: 토지매입 완료 및 건축기획 용역 착수

○ 2026. 6.: 설계공모 시행

○ 2026. 9.: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7. 9. ~ 2028. 12.: 공사 시행 완료

* 추진계획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남동 온세대 건강문화센터 조성 [부서명 : 도시재생과]

소재지	재산 종류	지목	(연)면적 (㎡)	소유자	취 득 년월일	기준 가격 (천원)	취득 금액 (천원)
		구조					
간석동 87-5	토지	대	205.6	남동구	2026.2.27.	291,000	733,043
	건물	연와조	320.12				
간석동 87-6	토지	대	244	남동구	2026.3.6.	341,000	819,130
	건물	연와조	329.73				
총 건축비		16,134,000천원					
사업기간		2025년 ~ 2028년					



202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 취득(남촌동 희망꽃 창작소 신축)】

의안
번호

3250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의 단위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을 조성하여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 등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남촌동 희망꽃 창작소 신축

○ 사업목적: 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 간 조성
(현장지원센터, 공방, 경로당 등)

○ 사업위치: 남촌동 340번지 외 3필지

○ 사업기간: 2023. ~ 2027.

○ 사업예산: 공사비 5,412,000천원 부지 매입비 871,906천원

○ 사업규모: 대지면적 772㎡, 연면적 995.95㎡ (지하1층, 지상3층)

○ 사 업 비 : 62억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 계약방법: 토지 매입(협의 매입), 건물신축(경쟁입찰)

○ 취득재산 기준가격 명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제7항]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은 공시된 주택가격, 그 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작성)

취득재산 종류	소재지	토지 면적(㎡)	건물 연면적(㎡)	*기준가격 (천원)	예정가격 (천원)	소유자	비고
건물	남촌동 339	255	203.12	341,000	843,244	남동구	단독주택
토지	399-5	34	-	33,112	28,662	남동구	
소 계		289	203.12	374,112	871,906		
건물	남촌동 339외 3	772	995.95	5,412,000	-	남동구	건물신축 공사비
총 계		1,061	1,199.07	5,786,112	871,906		

□ 추진사항 및 계획

○ 2023. 4: 사업대상지 매매계약 체결

○ 2023.10: 희망꽃 창작소 설계 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5. 9: 희망꽃 창작소 실시설계 용역 준공

○ 2025.10. ~ 2027. 4: 공사 시행

* 추진계획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유재산 (매입,신축) 관리조서

□ 사업명 : 남촌동 희망꽃 창작소 신축

[부서명 : 도시재생과]

위 치	남촌동 339, 339-5				
토 지	지 목	면 적 (㎡)	소 유 자	취득년월일	대장기권면적
	대 도	255	남동구	2023.05.01	843,244
건 물	연 면 적	995.95㎡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토지매입비	871,906천원				
총 건 축 비	5,412,000천원				
사 업 기 간	2023년 ~ 2027년(5개년)				

[위 치 도]

- 53 -

- 54 -

- 55 -

202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기관명 : 남동구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반기 이후			합 계			비고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건수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13	2,224.7	7,044,866				13	2,224.7	7,044,866	
		건물										
		기타				11	6,094.7	24,966,000	11	6,094.7	24,966,000	
	1. 매 입	토지	13	2,224.7	7,044,866				13	2,224.7	7,044,866	
		건물										매입금액 건물포함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취득	토지										건물신축.
		건물										공작물설치
		기타				11	6,094.7	24,966,000	11	6,094.7	24,966,000	

2026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수 량 (㎡)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구월2 (용천) 행복 마을 가꿈 사업	대	구월동 4-67	141.3	141.3	532,484	2026. 상반기	쉽터 조성	남동구	단독주택 매 입
	대	구월동 4-113	130.9	130.9	437,116	2026. 상반기	쉽터 조성	남동구	단독주택 매 입
	대	구월동 1243-8	169.7	169.7	535,142	2026. 상반기	쉽터 조성	남동구	단독주택 매 입
	대	구월동 4-67, 4-113, 1243-8	441.9	441.9	550,000	2026. 하반기	쉽터 조성	남동구	공 작 물 설치(3개소)
구월2 (느티 마루) 행복 마을 가꿈 사업	대	구월동 1248-36	163.4	163.4	468,900	2026. 상반기	쉽터 조성	남동구	공동주택 매 입
	대	구월동 1248-60	163.5	163.5	470,364	2026. 상반기	쉽터 조성	남동구	공동주택 매 입
	대	구월동 1248-61	163.4	163.4	473,567	2026. 상반기	쉽터 조성	남동구	공동주택 매 입
	대	구월동 1248-36, 1248-60, 1248-61	490.3	490.3	700,000	2026. 하반기	쉽터 조성	남동구	공 작 물 설치(3개소)

2026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수 량 (㎡)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재 지	수량(㎡)						
간석1 행복 마을 가꿈 사업	대	간석동 508-72	212	212	682,734	2026. 상반기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	강○미	단독주택 매 입
	대	간석동 508-72	212	212	1,100,000	2027. 하반기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	남동구	건물신축 (1개소)
간석3 행복 마을 가꿈 사업	대	간석동 61-6	154.9	154.9	441,448	2026. 상반기	쉽터 조성	김○열	단독주택 매 입
	대	간석동 6-25	187	187	579,032	2026. 상반기	주민공동 이용시설 조성	조○훈	상가주택 매 입
	대	간석동 61-6, 6-25	341.9	341.9	1,070,000	2027.	쉽터 조성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남동구	공작물 설치 (1개소), 건물 신축(1개소)
남동 온세대 건강 문화 센터 조성	대	간석동 87-5	205.6	205.6	733,043	2026.	건강문화센터 조성	남동구	단독주택 매 입
	대	간석동 87-6	244	244	819,130	2026.	건강문화센터 조성	남동구	단독주택 매 입
	대	간석동 87-5, 87-6	1,362.3 (기 확보분 912.7 포함)	3,612.7 (연면적)	16,134,000	2028.	건강문화센터 조성	남동구	건물신축 (1개소)

2026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수 량 (㎡)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비 고
	지목	소 계 지	수량(㎡)						
남촌동 희망꽃 창작소 신축	대	남촌동 339	255	255	843,244	2023.	희망꽃 창작소 신축	남동구	단독주택 매 입
	도	남촌동 339-5	34	34	28,662	2023.	희망꽃 창작소 신축	남동구	토지매입
	대	남촌동 339, 339-5	289	995.9 (연면적)	5,412,000	2027. 상반기	희망꽃 창작소 신축	남동구	건물신축 (1개소)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1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 및 별표를 정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금고지정 기준 세부사항 신설(안 제7조제1항제6호)
-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제5항)
- 금고약정 금리 공개 및 방법 조항 신설(안 제12조제5항)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정비(안 별표 1 및 안 별표 2)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배점기준 일부 변경
 - 금고지정 평가항목의 항목 및 세부항목 명칭 일부 변경
-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정비(안 별표 2)
 - 항목 2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도록 추가 배점 불가 규정 삭제
 - 항목 2 및 항목 5의 가목에 다른 평가 항목 순위 간 편차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하는 차등 적용 규정 삭제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회계법」 제38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회계법」 제38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지정한 「은행법」”을 “지정한 「은행법」”으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을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을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으로 한다.

제3조 단서 중 “다만, 「지방공기업법」”을 “다만, 「지방공기업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국민의 이용”을 “국민 이용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협력”을 “협력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사항

제11조제1항 중 “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를 “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4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제2항 관련)

항목	세부항목	배점	비고
계		100	
	소계	2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의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8)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률(건전성, 1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 협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른다.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18)	
	소계	22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에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공공예금, MMDA, 보통예금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라. 정기에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7) (9) (4) (2)	
	소계	19	
3. 구민 이용의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7) (5) (7)	
	소계	24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수납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6) (8) (8) (2)	
	소계	7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 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구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5) (2)	
	소계	2	
6. 그 밖의 사항	가. 탄소중립 기여도	(2)	

[별표 2]

남동구 금고지정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제7조제2항 관련)

I.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1-가 및 나)의 경우는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5(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3. 평가점수에 소수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고 셋째 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II.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6점)

-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점)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8점)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무기관 및 관련 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안정성, 6점)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률(수익성, 5점)
- 대손충당금 적립률(건전성, 1점)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22점)

-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7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9점)
- 공공예금(보통예금 포함) 및 MMDA 적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4점)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라.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 금리(2점)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구민 이용의 편의성(19점)

- 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7점)
- 구민의 금융거래와 지방채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 대수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점)
- 최근 수년간 지방세입금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7점)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 등을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점)
- 지방세입금 수입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8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8점)
- 금고관련 세입·세출의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입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 및 전산보안 관리계획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 라. 수입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2점)
- 수입시스템(OCR센터 등)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사업(7점)

-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사회복합 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
에 따라 배점
- 나. 구와의 협력사업계획(2점)
- 출원금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6. 그 밖의 사항(2점)

- 가. 탄소중립 기여도(2점)
- 금융기관별 탄소중립 선언 여부 및 이행계획(기존 석탄발전 투자금 출구계획 등), 기후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가입여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 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48조에 따라 남동구 금고 의 지정과 그 금고의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회 계법」 제38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금고”란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 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 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 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 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 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1.----- ----- ----- ----- ----- ----- 지정한 「은행법」----- -- 금융기관과 「지방회계 법」 제38조제1항----- -----
2.“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 를 말한다.	2.“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3.“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 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	3.“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 법」-----

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 ----- ----- ----- ----- -----.
4.“기금”이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4.----- ----- -----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 -----.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 및 운영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적용범위) ----- ----- ----- -----. 다만, 「지방공기업법」----- -----.
제7조(금고지정 기준) ① 제6조에 따라 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금고지정 기준) ①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u>구민의 이용 편의성</u>	3. <u>구민 이용의</u>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5. <u>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의 협력</u>	5. ----- 협력사업
<신설>	6. <u>그 밖의 사항</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구청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금고와의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을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u>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통지</u> 해야 한다.	제11조(금고지정 절차) ① ----- ----- ----- ----- ----- ---- <u>공고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u> -----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구청장은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위원회에서 정한다.</u>
제12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① ~ ④ (생략)	제12조(금고지정 공표와 약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설>	⑤ <u>구청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u>

제15조(협력사업비) ① 구청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그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u>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여야 한다.</u>
② (생략)	제15조(협력사업비) ① ----- ----- ----- 「지방재정법」 제34조----- ----- -----.
	②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으로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재정경제국 세무1과장 최명희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정, 변경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공고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③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④ 금고의 지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금고 업무의 약정)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 ②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자산총액이 2천500억원 이상일 것
2. 자본총액이 250억원 이상일 것
3. 자산총액에서 자본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일 것
4.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일 것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 금고 업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금고는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금고로서의 의무와 제3항에 따른 약정사항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5. 12. 9.>
1. 제3항에 따라 약정한 금고 업무 약정기간
2. 금고의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지표
3. 금고 업무 약정기간 전에 금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4. 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지정의 세부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1. 총 칙

[1] 목 적

○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①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

② 일반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
③ 특별회계(「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

④ 기금(「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함

⑤ 금고지정
- 금융기관 중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함

⑥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자치단체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됨

[3] 적용범위

○ 본 기준은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함
○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않음

[4] 금고의 수

○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자치단체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특정기금을 예치할 경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내 금리가 높은 상품에 예치·운용하여야 하며,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에 예치하는 것은 지양

[5] 금고의 약정기간

○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금고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함

2. 금고지정 방법

[1] 개 념

○ 금고지정 방법에는 경쟁방법 및 수의(隨意)방법이 있으며,
- 경쟁방법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 수의방법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함

[2] 금고지정 방법

○ 금고지정은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하여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음

가.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나.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다.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또는 관할 자치단체를 2개 이상의 자치단체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당해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에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 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3. 금고지정 평가기준

[1] 경쟁방법에 의하여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

○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으로 평가함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나.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다.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22)

마.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바.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 「지방세기본법」 제135조제2항 및 「지방행정체제·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입금 납부·수납처리를 위한 전자적서비스

에 해당되는 부분은 평가에서 제외

○ <별표>의 기준 중 항목 6(기타사항)은 다음과 같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음

가. 항목 6에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음 (예시① 참조)
나. 항목 6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목 6의 배점(11점)을 항목 1, 2, 3, 4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분하거나 또는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있음(예시③ 참조)

- 항목 5(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으며, 또한 항목 5와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 다만, 항목6을 활용하여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음

○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의 원칙을 준수하여 조례(규칙)으로 정하여야 함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
·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음(예시② 참조)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함(예시② 참조)

- 다만, 항목 5(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함

(예시①) 항목 6을 정하는 경우

지 점	조례 또는 규칙한 예시
6. 기타사항(11)	6. 기타사항(11) - 항목 가. 지역재투자 실적(3점) - 세부항목 · 금융위의 지역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주민지원 수입결과(5점) - 세부항목 · 전담대응조사기관을 통해 실고 지원내용 등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 20년부터 세부 실시방법을 다문화에 반영 가능 다. 2000년 - 세부항목

(예시②) 배점하한 및 점수편차(순위간 점수편차 10% 적용시, 항목5는 5%적용)

지 점	조례 또는 규칙현(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재무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산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산비율(안정성, 6점) 평가 - 고정비하여신비율(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항 유형별(신원, 농수 산업조항, 세마을공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융원, 세마을공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감사기준에서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함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 가. 재무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 (1순위 4.0점, 2순위 3.6점, 최저순위 2.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산비율(안정성, 6점)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산비율(안정성, 6점) 평가 - 고정비하여신비율(안정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항 유형별(신원, 농수 산업조항, 세마을공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융원, 세마을공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 평가 또는 감사기준에서 알맞다고 인정되는 경우 한함처리 가능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 (1순위 2.0점, 2순위 1.0점, 최저순위 1.2점)	5.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 (1순위 2.0점, 2순위 1.0점, 최저순위 1.2점)

(예시③) 항목 6(자치단체 자율항목)의 배점을 타 항목에 배분하는 경우

지 점	조례 또는 규칙현(예시)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5점) 가. 재무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7) - 총자산비율(6)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산비율(안정성, 6점) 평가 - 고정비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항 유형별(신원, 농수 산업조항, 세마을공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융원, 세마을공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감사기준에서 알맞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한함처리 가능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27점) 가. 재무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8)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19) - 총자산비율(6) ※ 지역조항에 대해서는 순자산비율(안정성, 6점) 평가 - 고정비하여신비율(6) - 자기자본이익율(5)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또는 대손충당금 비율을 등(2) - 상목추가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항 유형별(신원, 농수 산업조항, 세마을공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 기관(금융원, 세마을공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 실태평가 또는 감사기준에서 알맞다고 인정 되는 경우 한함처리 가능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응 및 대응금리(17점) 가. 평가예금 예치금리(7) 나. 수신입출금지 예금 적용금리(6) 다. 자치단체 대응금리(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점) 가. 판매제일지 수, 판매 무인점포 수, 판매 ATM기 설치 대수(7) ※ 금고지점 여부에 따라 평가로 일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5)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6)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편안시스템 보안관리 등 편안처리능력(8) ※ 편안시스템 보안인용 등 편안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 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 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학요로인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확요로인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응 및 대응금리(20 점) 가. 평가예금 예치금리(8) - 추가배점 나. 수신입출금지 예금 적용금리(7) - 추가배점 다. 자치단체 대응금리(5) - 추가배점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21 점) 가. 판매제일지 수, 판매 무인점포 수, 판매 ATM기 설치 대수(9) - 추가배점 ※ 금고지점 여부에 따라 평가로 일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6) - 추가배점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7) - 추가배점 4. 금고업무 관리능력(25 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6)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8) 다. 편안시스템 보안관리 등 편안처리능력(10) ※ 편안시스템 보안인용 등 편안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인식 운영능력 및 계획(3) - 상목추가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7 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5점)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2 점)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학요로인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확요로인 평가 ※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2]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평가기준

○ 지역실정, 금융기관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음

[3]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평가

① 자치단체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 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기존 협력사업실적 배제)

※ 금고지정을 위한 입찰공고서에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중 "5.-나. 자치 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하도록 명시

※ 2014. 3. 7. 개정 · 시행한 동 예규 부칙의 경과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 소관 사업에 금고가 직접 현금으로 집행하는 협력사업은 2016. 3. 1.부터 자 치단체 출연금으로 변경

②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관련 항목에 추가배점 등 불가

○ 자치단체에 출연한 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간 의 과당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 본 항목에는 세부항목을 추가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하여 줄 수 없음. 또한, 본 항목과 유사한 세부항목을 다른 항목에 추가할 수 없음

③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시 행정안전부에 사후 통보

○ 자치단체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해야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참조

** 직전 금고는행과 약정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와 신규 금고는행과 약정 기간의 연평균 출연금 규모 비교

○ 복수금고의 경우에도 각 금고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함

4. 금고의 지정절차

[1]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함)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

※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분할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함

가.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

–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

나.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

다.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라.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함

-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의 장 이 위촉함

- 위원장 및 위원 선정, 위촉 기간, 위원 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2]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을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

-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 심의위원회는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을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 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 시 각 항목별 평가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결과에 상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4] 금고의 지정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함

5. 금고약정 및 해지

[1] 금고약정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起債), 배상 및 번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2] 금고약정의 해지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6. 금고약정의 공개

[1] 평가결과의 공개

- 자치단체의 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함

[2] 협력사업비의 공개 방법

- (금액 공개)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 (세입예산 편성내역 등 공개)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

[3] 금고 약정 금리 공개

-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자치단체 누리집과 자치단체 공보(시보·도보·군보·구보)에 공개

7. 보 칙

[1] 조례 등 위임

- 본 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 약정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고나 자료 제출의 내용*·시기 등을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정함

* (예시)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 수입 총액 등 자금 관리 필요 사항

[2] 제검토 기한

-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9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46호, 2025. 12. 10.>

-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자치단체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비 고
계		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중차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익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른 것으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른다.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영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8) (17)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적용 금리 ※ 수시입출금식 예금 : 공공예금 , MMDA보통예금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7) (6) (4)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 *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 (5) (6)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22) (6) (8) (8)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위 등 재투자 평가결과 반영 가능 나.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7) (5) (2)	
6. 기타 사항	자치단체 자율항목 * 녹색금융 이행실적 * 탄소중립 기여도 * 주민 의견 수렴결과 반영 가능	11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2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상위법 반영을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재난관리기금의 타 회계 예탁운용 불가 규정 삭제 : (안 제3조제4항 삭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지방재정법」 제9조의2
○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른 예수·예탁 활용 가능 안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4059(2025. 8. 14.)호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생략) ④ 각종 재난이 발생할 때 기금을 긴급하게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회계 등 다른 회계에 재정융자·예탁운용을 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복 지 건 설 위 원 회]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3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

□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 임기 및 부위원장 선출 등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목적, 정의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안 제1조~제3조)
-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안 제4조~제9조)
- 위원장 및 위원에 관한 사항 등(안 제10조~제14조)
-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및 제16조)
- 의결사항의 처리(안 제17조)
-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안 제18조~제23조)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남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표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조직으로,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 계층 발굴 등 보장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 체를 말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 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을 둔다.

제4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3.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 축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대표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 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분과)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고,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 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행사 개최 및 시

상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게 동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규격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③ 동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동 실정에 맞게 동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 ① 남동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 체 연합회(“동 연합회”라 한다)는 각 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으로 구 성한다.

② 동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 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제안
2.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조정, 연계, 협력도모
3.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제9조(위원의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며, 실무분과

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연합회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민간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협의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전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각 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지원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팀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팀장 및 직원은 협의체 소속으로, 민간공동위원장이 채용한다.

④ 사무국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5조(회의)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협의체 위원장 또는 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대표협의체 : 연 2회 이상
2.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협의체 : 연 4회 이상

제16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및 의결결과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또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증 규격 및 기재 사항

(제7조제2항 관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증	사 진 (3cm × 4cm)
0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 ○	
남동구청장 	

No. 0000-000

소 속 : 000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 명 :
위 축 일 : . . .

0000. 00. 0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1.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1. 본 신분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분 확인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할 수 없습니다.
2. 본 증을 습득하신 분은 남동구청 복지정책과 (☎032-453-20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면)

(뒷면)

* 규격 및 재질 : 가로 54mm × 세로 86mm / PVC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개정안은 현행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위원 임기 및 부위원장 선출 등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협의체 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박은경

[참고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3. 2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된 공동위원장을 말한다)
5.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

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⑦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 단위로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에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신설 2017. 3. 21.>

⑧ 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7. 3. 21.>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 9. 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 9. 21.>

1. 관할 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다문화가족 등 사회보장사업에 의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②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면장·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 9. 21.>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

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삭제 <2017. 9. 21.>

5.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6.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밖에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③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면장·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54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참전유공자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안 제1조 및 제2조)
- 지원대상 기준 설정 : (안 제3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수당 신청 및 대리수령 절차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수당 지급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
- 수당 지급 중지 사유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 수당 환수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유사한 성격의 수당과 중복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
- 참전유공자 수당 등 각종 신청서식 : (안 별지 제1호서식~제4호서식)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39조제1항
- 「전자정부법」 제36조부터 제38조제1항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국민 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해외동포의 경우 거소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사업)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8만원 이내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10만원 이내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2만5천원 이내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례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⑤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사망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첨부서류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날을 수당지급일로 한다.

③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

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또는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구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수 급 권 자	성 명		지급대상유형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예 금 계 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유의사항 :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등 알뜰방지전용계좌 사용불가				
「납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납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당 지급을 위한 기간 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거부: 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사망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훈대상자와 관계			
	입급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3. 사망자의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 초본(사망자)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참전유공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전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유의사항 :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불가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서 사본 2. 참전유공자와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4.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통장 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당 지급을 위한 기간 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서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		
수급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사유					
대리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예금계좌	계좌번호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유의사항 :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등 압류방지전용계좌 사용불가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리수령인 지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참전유공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1부. 4. 대리수령인 명의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대리수령인 지정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대리수령인 지정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당 지급을 위한 기간 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대리수령인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기존 조례에서 대상별 규정을 분리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박은경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5조(등록 및 결정) ①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할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존심사위원회(이하 “보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해당 등록신청 서류에 의하여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등록한 날에 이 법에 따른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면 본인에게 제3항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마치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제39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가. 「형법」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64조의 죄, 제279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5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와 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

337조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 제350조, 제350조의2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 및 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사.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및 제15조의 죄

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죄

□ 전자정부법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행정정보 목록을 조사·작성한 내용을

-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표하고, 행정기관등이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생성·가공·이용·제공·보존·폐기 등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조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정보의 원활한 공동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이하 “공동이용센터”라 한다)를 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36조제2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

제38조(공동이용 행정정보) ①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사항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2. 통계정보, 문헌정보, 정책정보 등 행정업무의 수행에 참고가 되는 행정정보
3. 행정기관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5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

○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함에 따라 기존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의 중복 및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 관련 지원 규정을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분리 규정
-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방식을 위한 정비: (안 제8조제2항제2호)
- 그 밖에 참전유공자 관련 지원 규정 분리에 따른 용어 및 서식 정비

○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의 본문과 각 호의 부분 중 “수당 및 배우자수당”을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급권자 및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당 또는 배우자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12조 중 “수당 또는 배우자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제13조 중 “수당, 배우자수당”을 “수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참전유공자”를 “상이군경”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참전유공자 □”를 삭제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 □ 전몰군경유족 □ 보훈대상자 □ 상이군경 □	처리기간 30일
수급권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소	전화번호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 유의사항 :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등 입류방지전용계좌 사용불가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2. 주민등록표 초본 1부 3. 통장 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보훈예우수당 지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2. 수집하는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예금계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당 지급을 위한 기간 동안 보유하며 그 이후에는 삭제합니다. 4.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할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독립유공자 □ 보훈대상자 □	처리기간 10일
사망자	성명	지급대상유형	
	주민등록번호	보훈번호	
	주소		
	사망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대상자와 관계	
	입금계좌	예금주	금융기관명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3. 사망자의 법정상속인(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민등록표 초본(사망자) 1부 5.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제출 생략)		없 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행	개정안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국 가보훈부에 등록된 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구에 주민 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 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 및 건강생활지원 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65세 이상의 참전유 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65세 이 상의 법률상 배우자(이하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라 한다) 에게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이 하 “배우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예우수당 : 월 5만원 이 내. 다만,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3만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 다. 2. 3. (생략) 4. 배우자수당 : 월 2만5천원 이 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 우)	제8조(보훈예우수당 등 지급) ① ---. <후단 삭제> 1. --- --. <단서 삭제> 2. 3. (현행과 같음) <삭제>

제11조(수당지급의 중지) -----

제13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관리) 구청장은 수당, 배우자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13조(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관리) ----- 수당 -----

따라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 --.
-------------------	--------------

[참고자료]

□ 남동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사업)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하 “명예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8만원
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10만원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2만5천원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경우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인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5일까지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을 수당지급일로 한다.

③ 다른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또는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6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국정과제 관련 법령 위임 사항)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항을 구체적
으로 명시하여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상위법령 위임 근거 및 조항 명시 (안 제1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을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 ----- ----- -----.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작성자: 복지국 복지정책과장 박은경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통합지원협의체)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서 통합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협의체를 둔다. 이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지역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

의안
번호

3257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6. 9. 2.) 도래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치유·회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남동구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위탁시설

시설명	소 재 지	규모	개설일	정원(원인)	종사자
남동래인보우	남동구 관내 (비공개시설)	144.04㎡	2021.09.16.	7명(4명)	6명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26. 9. 3. ~ '31. 9. 2. 예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유지 및 관리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 피해아동의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등

○ 소요예산 : 3,066,202천원(5년)

□ 참고자료

○ 참고 1 : 민간위탁 추진 계획 1부

○ 참고 2 : 관련법령 1부

- 158 -

- 159 -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6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 비용추계의 기간 : 2026년 ~ 2031년(5년)

○ 비용추계의 범위 :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6년 ~ 2031년(5년)

○ 발생비용 : 3,066,202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국비 40%, 시비 60%

○ 종사자 처우개선비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작성자: 복지국 아동복지과장 황수연

- 160 -

[붙임]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6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362,276	410,742	466,505	530,780	605,009	690,890	3,066,202	
국비보조금		122,398	146,877	176,253	211,503	253,804	304,565	1,215,400	
시비보조금		239,878	263,865	290,252	319,277	351,205	386,325	1,850,802	
세 출		362,276	410,742	466,505	530,780	605,009	690,890	3,066,202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362,276	410,742	466,505	530,780	605,009	690,890	3,066,202	
재원 조달		362,276	410,743	466,506	530,781	605,010	690,891	3,066,207	
의존 재원	소 계	362,276	410,742	466,505	530,780	605,009	690,890	3,066,202	
	보조금	국비	122,398	146,877	176,253	211,503	253,804	304,565	1,215,400
	시비	239,878	263,865	290,252	319,277	351,205	386,325	1,850,802	
	지방 교부세	-	-	-	-	-	-	-	
	조정 교부금	-	-	-	-	-	-	-	
자체 수입	소 계	-	-	-	-	-	-	-	
	구 비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인건비(종사자 호봉승급)는 연간(2026년) 인상률(3.5%) 적용 추산
- 운영비는 2026년도 지원기준 반영

비용 세부 추계표(2026년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기준)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천원)
계	인건비(종사자 6명), 운영비, 사업비		362,276
인 건 비	[인건비] 259,632천원 - 1개소 × 6명 × 43,272천원(1인평균) [처우개선비] 47,983천원 - 임금보전수당 39,583천원 - 복지점수 1,600천원 - 종합검진비 200천원 - 급량비 및 관리자수당 6,600천원	시설장 1명 보육사 4명, 임상심리치료사 1명	315,910
운 영 비	[운영비] 13,170천원 - 1개소 × 13,170천원(1기관당 평균) [난방비] 600천원 - 1개소 × 300천원 × 2개월	여비, 수용비, 공공요금, 난방비 등	13,770
사 업 비	[사업비] 32,596천원 - 1개소 × 32,596천원(1기관당 평균)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상담 및 치료 문화프로그램, 정서지원 등	32,596

【참고 1】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추진 계획(안)

- ◆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위탁기간 만료(2026. 9. 2.)가 도래함에 따라 공백 없는 안정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 아동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춘 우수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학대피해아동에게 보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치유·회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함

I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업의 기준 등)

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우수한 수탁기관 발굴로 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시설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분야의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사업의 전문성 확보
-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심사위원회 구성으로 수탁자 심의의 객관성 및 신뢰도 확보

III 위탁대상시설 현황

- 시설명 :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남동레인보우, 남아전용)
-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비공개시설)
- 시설규모 : 144.04㎡ (지상1층)
- 입소정원 : 7명
- 관내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시설명	운영법인	시설장	규모	종사자수	정원(현원)	위탁기간
남동레인보우	(사)인천아동청소년희망재단 (대표자 : 박준경)	김신남	144.04㎡ (지상1층)	6명	7명 (4명)	2021.09.03.~ 2026.09.02.

- 주요업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유지 및 관리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 피해아동의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등
- 2026년 지원예산 : 총 362,276천원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 305,998천원(국비40:시비60)
 -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처우개선 : 56,278천원(시비100)

IV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개요

- 위탁시설 :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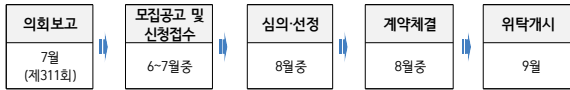
시설명	소재지	규모	개설일	종사자	정원(현원)
남동레인보우	관내 공동주택 (비공개시설)	144.04㎡ (지상1층)	2021.9.16.	6명	7명(4명)

- 위탁기간 : 2026. 9. 3. ~ 2031. 9. 2.(5년) 예정

- 수탁자 자격
 - 공고일 현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으로 인천광역시에 주사무소 또는 지부를 두고 있는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 하는 법인(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협동조합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포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위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유지 및 관리
 -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 피해아동의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지원
 -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등

V 세부 추진계획

□ 민간위탁 추진절차



① 의회상정

- 근거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 시기 : 제311회 남동구의회 임시회(2026. 7월)
- 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② 모집공고 및 접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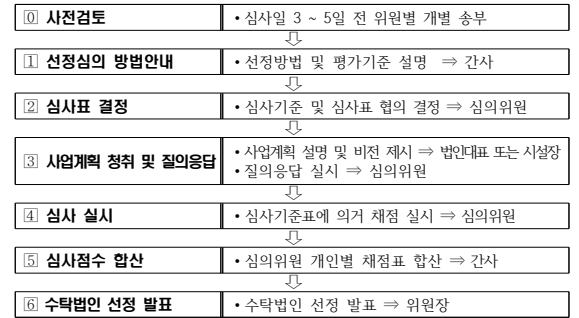
- 공고기간 : 2026. 6. 26.(금) ~ 7. 16.(목) [20일간]
- 접수기간 : 2026. 7. 09.(목) ~ 7. 16.(목) 18:00까지 [7일간]
- 공고방법 : 남동구 홈페이지 게재
- 접수장소 : 남동구 아동복지과 아동보호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 1개 법인(단체) 신청 시 재공고(10일 이상), 재공고 후에도 1개 기관 신청 시 심사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체 선정

③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계획 별도 수립

- 근거 :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 구성일 : 2026. 7월 중
- 구성위원 : 아동(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등 6 ~ 9명
 - ※ 관계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변호사 등

④ 심의절차 및 방법

- 심사일 : 2026. 8월 중
- 심의절차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시설운영 전문성 및 의지	법인(단체) 공신력	재정운영 책임성
배 점	100	40	40	15	5

※ 감점항목(1건당 -5점) : 최근 3년간 법인(단체) 및 산하시설 행정처분 또는 벌칙

- 신청자 발표 및 채점

- 발 표 자 :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 내정자
- 발표시간 : 신청기관 당 10분(프리젠테이션 등)
- 진행방식 : 사업계획 등 설명·질의응답 후 개별 위원 채점

- 선정방법

- 최고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실무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정함(소수점 두자릿수까지 계산)
- 재공고 후에도 단수 신청 시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 수탁자로 선정
- 위원회 심사결과 신청자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 후 다시 공개모집 하여 위탁체를 선정

⑤ 위·수탁 계약체결

- 시 기 : 2026. 8월 중
- 위·수탁계약 체결 및 위탁증서 수여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구 홈페이지 게시

⑥ 시설 운영

- 기 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
- 운영내용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VI 향후계획

- 민간위탁 보고안 의회 상정 : 2026. 7월
-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 : 2026. 6 ~ 7월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의 : 2026. 7 ~ 8월
- 위·수탁계약 체결 : 2026. 8월

【참고 2】

관 련 법 령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역별 아동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아동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2.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치료
3. 피해아동에 대한 학습 및 정서 지원
4.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④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기준·운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8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2026년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연회비 면제 대상에 청소년부모가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연회비 면제 대상에 청소년부모가족 조항 신설 : (안 제9조제3항제5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2026년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부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9조(연회비 징수) ①·②(생략)	제9조(연회비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여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
1. ~ 4. (생략)	-----
<신설>	-----.
5. ~ 8.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략)	5. 「 <u>청소년복지 지원법</u> 」에 의한 <u>청소년부가족</u>
	6. ~ 9. (현행 제5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동구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의 연회비 면제대상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어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고자 함

작성자: 복지국 보육정책과장 박미경

□ 인천광역시 「2026년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 (지침)

- 연회비 면제대상 : 다음의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자녀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한 청소년부모*가족
 - * (청소년부모)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 (청소년)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만9세이상 만24세이하 사람
 -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정
 - ※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내국인 가정에 한함
 - 장애아동을 둔 가정
 -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
 - 영유아의 부모가 국가유공자인 가정
 - 영유아 위탁가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 5. (생략)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 3. (생략)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 8. (생략)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59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근거 법령 변경 및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 위원장 지정방식 변경(안 제3조제2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제5항)
- 간사 규정 명확화(안 제13조제1항)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를 “조례는 「산림재난방지법」 제23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를 “소관사무의 국장이 되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제1항 중 “간사를”을 “간사 1명”으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0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용어 정비 : (안 제1조 및 제2조)

○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3조제2항, 제3조제3항)

○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및 신설 (안 제7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교통안전법」 제13조

○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 191 -

남동구 조례 제 호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남동구에 두는”을 “남동구”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교통안전 관련 주요정책”을 “교통안전정책업무”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구청장”을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남동구 자동차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남동구 도로교통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인천논현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인천남동소방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 192 -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간사와 서기)”를 “(간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간사 1명 과 서기”를 “간사”로,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 된다”를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 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93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u>남동구</u> 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남동구</u> ----- ----- ----- ----- -.
제2조(기능)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2조(기능) ----- ----- ----- ----- -----.
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규정에 <u>의한</u>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 <u>따른</u> ----- ----- -----
2. <u>교통안전 관련 주요정책</u> 에 관한 사항	2. <u>교통안전정책업무</u> -----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부구청장</u> 이 된다.	② ----- ----- <u>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국장</u>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③ ----- -----

위촉하며,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환경교통국장

2. 자동차관리과장

<신설>

3. 인천남동경찰서 경비과장

4. 인천논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5. 인천남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

6.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관리국장

7. 남동구의회 의원 1명

8.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생략)

제7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 제7호-----

-----.

1. 남동구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남동구 자동차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남동구 도로교통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인천남동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인천논현경찰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인천남동소방서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8. (현행 제7호와 같음)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제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 된다.

②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 -----
----- 간사 -----
----- 교통안전정책업무담당이 된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61
----------	------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경형 및 이륜자동차 이용자와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동 행정복지센터 내 또는 인접부지 공영주차장 이용 시 감면 혜택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 적용 기준을 명문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경형 및 이륜자동차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개정 : (안 제5조제2호)
- 병역명문가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개정 : (안 제5조제11조)
- 장기기증자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신설 : (안 제5조제14호)
-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영주차장 감면 혜택 신설 : (안 제5조제15호)
- 동 행정복지센터 내 및 인접 공영주차장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자치 프로그램 이용 시 감면 혜택 신설 : (안 제5조제16호)
- 제5조와 별표1제6호에 따른 감면 중복 제한 신설 : (안 별표1제6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검토 결과 회신 (교통행정과-4477(2025. 2. 20.))
-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 조례 개정 협조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1387(2026. 4. 23.))
- 인천시 및 타 군·구 감면 조항 비교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50”을 “60”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30”을 “50”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호부터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16. 공영주차장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에 위치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 민원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주민 등에 대한 주차권의 제공을 위하여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주차 요금 면제

별표 1 비고 제6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

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 30분까지	15분당		
1 급 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 급 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 급 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 급 지	300원	10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1.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공영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3. 노외공영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4.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5. 월정기가 아닌 10일 이상의 주차의 경우 10일 단위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6. 주차요금의 특례
 - 가.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른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나. 구청장은 월정기 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 10대 이상의 다수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 부정주차의 경우는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천시시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2. ----- 60 --
3. ~ 10. (생략)	3. ~ 10. (현행과 같음)
11.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11. ----- ----- ----- ----- ----- -- 50 --
12.·13. (생략)	12.·13. (현행과 같음)
<신설>	14.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서 운전면허증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증명서에 장기기증자 및

<신설>	기증희망자임을 표시하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신설>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을 감면
	16. 공영주차장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또는 인접한 부지에 위치하고, 행정복지센터 방문민원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이용 주민 등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하여 요금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초 2시간 주차 요금 면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
3. 미첨부 사유 비용발생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장 김맹화

□ 남동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장기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장기기증 활성화와 사업의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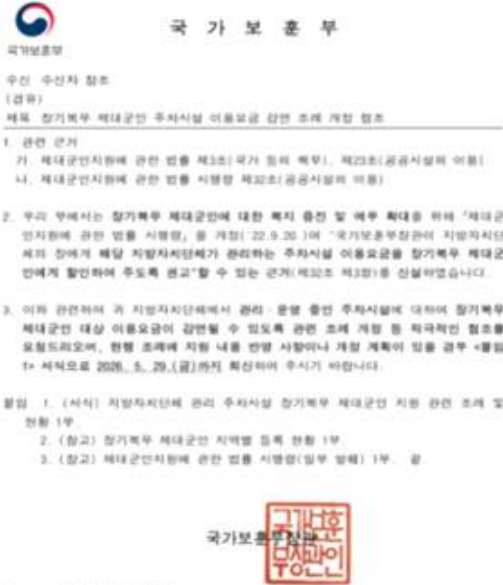
□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검토 결과 회신(교통행정과-4477(2025. 2. 20.))



남 동 구 청 장

구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요금(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 조례 개정 협조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정책과-1387(2026. 4. 23.))



국가보훈부장관

구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주최비	구분명	주최자(담당자)	담당	주최비(주최비)	주최비(주최비)

□ 인천시 및 타 군·구 감면 조항 비교표

구분	경형 및 이륜자동차	병역명문가	비고
남동구	100분의 50	100분의 30	
인천광역시	100분의 60	100분의 80	
계양구	100분의 60	100분의 50	
동구	100분의 60	100분의 50	
미추홀구	100분의 60	100분의 80	
부평구	100분의 60	100분의 80	
서구	100분의 60	100분의 50	
연수구	100분의 60	100분의 80	
중구	100분의 60	100분의 80	
강화	100분의 50	100분의 50	
옹진	100분의 60	-	

구월34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

구월349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262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인천시 공고 제2022-3592호(2022. 10. 4.), 2023년 1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의한 후보지 선정(2023. 6. 28.)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 구월동 349번지 일원 “구월349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2022. 10. 4. :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3592호) ○ 2023. 01. : 재개발 사전검토 제안(주민→남동구) ○ 2023. 06. 28. :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선정(인천시) ○ 2024. 09. 04.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5. 04. 12. : 사전 주민설명회 실시 ○ 2025. 05. ~ 2025. 11. : 주민 동의서 정구 ○ 2025. 10. ~ 2026. 03. :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한국부동산원) ○ 2026. 04. : 추정분담금 및 동의철회서 발송 ○ 2026. 05. : 정비계획(안) 관련부서(기관) 협의		

□ 주요내용 ○ 토지이용구상 - 지형여건과 도로 현황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 기존 도로 폐지로 인한 보행 단절에 대응하기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 인근의 추진 중인 만수천복원사업과 연계하여 공원 조성 및 보행동선계획 수립 - 기반시설의 적정 배치를 통한 이용 편의 증진 및 이용 효율성 극대화 ○ 정비구역 일반현황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로 19,059.0㎡(도시계획시설 14,520.5㎡/비결정시설 4,538.5㎡) : 주차장 4,530.0㎡(도시계획시설 4,342.1㎡/비결정시설 187.9㎡) : 공원 2,832.8㎡(도시계획시설 2,832.8㎡) : 사회복지시설 497.0㎡(도시계획시설 497.0㎡) : 노유자시설 210.0㎡(비결정시설 210.0㎡) - 토지현황 : 국공유지(63필지, 26,965.8㎡), 사유지(413필지, 53,540.1㎡), 기타(8필지, 230.0㎡) - 건축물현황 : 유희가 329동(주거용 289동, 비주거용 40동) : 무허가 3동(멸실건축물 1동 포함) ○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 거주가구 : 2,334세대(건축물대장 기준, 2024) - 권리자(토지등소유자) : 2,190인(소유자 명부 기준, 2026) ○ 주민 동의서 정구 결과 - 동의율(59.68%), 동의면적(67.83%) ※ 동의율 기준: 토지등소유자 수 5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 향후 일정계획 ○ 2026. 07. 01. ~ 07.31. : 주민 공람 ○ 2026. 07. 06. : 주민설명회 ○ 2026. 09. ~ 2026. 10. :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인천광역시) ○ 2026. 11.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 참고사항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첨부1]		
--	--	--

■ 첨부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구월349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구월349 재개발구역	남동구 구월동 349번지 일원	80,735.9	-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분	총 수입 추정 (원)	총 지출 추정 (원)	종전자산총액 추정 (원)	추 정 비례율	비 고
내용	848,001,884,000	731,644,325,000	175,535,536,000	66.29%	한국 부동산원

※ 금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는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80,735.9	100.0	-
택지	소 계		53,605.9	66.4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52,831.5	65.4	-
	종교 시설	소 계	774.4	1.0	-
		종교시설1	291.7	0.4	존치
		종교시설2	482.7	0.6	존치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소 계		27,130.0	33.6	-
	도 로		5,652.7	7.0	-
	주 차 장		5,429.5	6.7	-
	공 원		14,512.7	18.0	-
	사회복지시설		1,535.1	1.9	-

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2	15	국지 도로	1,205	광3-7	대1-14	일반 도로	-	1970.02.09. (건설1970-54호)	-
변경	중로	2	22	15~22 (대표 폭원 15)	국지 도로	1,205	광3-7	대1-14	일반 도로	-	1970.02.09. (건설1970-54호)	폭원 변경
기정	중로	2	25	15	국지 도로	1,205	대3-11	중2-21	일반 도로	-	1970.02.09. (건설1970-54호)	-
변경	중로	2	25	15~19.5 (대표 폭원 15)	국지 도로	1,205	대3-11	중2-21	일반 도로	-	1970.02.09. (건설1970-54호)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166	8	국지 도로	57	중3-35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변경	소로	1	A	10	국지 도로	57	중3-35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168	8	국지 도로	240	중3-35	소2-172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변경	소로	1	B	8~10 (대표 폭원 10)	국지 도로	118	호구포로 810번길 58	소2-172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연장 축소·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113	8	국지 도로	147	광2-7	중3-28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변경	소로	2	113	8	국지 도로	30	소2-179	중3-28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연장 축소· 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161	중2-25	중3-28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변경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64	구월동 349-32	중3-28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연장 축소
기정	소로	2	165	8	국지 도로	57	중3-35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변경	소로	2	165	8	국지 도로	57	중3-35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선형 변경
기정	소로	2	169	8	국지 도로	177	중3-35	소2-172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변경	소로	2	169	8	국지 도로	118	복개서로 89번길 9	소2-172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연장 축소

폐지	소로	2	177	8	국지 도로	259	소2-168	소2-179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폐지	소로	2	178	8	국지 도로	36	중2-22	소2-177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폐지	소로	2	179	8	국지 도로	107	중2-22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폐지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62	중2-22	소2-181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폐지	소로	3	45	6	국지 도로	106	구월 349-753	구월 349-64	일반 도로	-	1994-09-15 (인원1994-154호)	-
폐지	소로	3	47	6	국지 도로	165	구월 349-771	구월 349-64	일반 도로	-	1994-09-15 (인원1994-154호)	-
폐지	소로	3	48	6	국지 도로	35	소2-89	구월 산16-23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폐지	소로	3	226	6	국지 도로	180	중2-64	소2-225	일반 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조서 및 고시 참조

※ 관계기관 협의 2차의견 : 중로>소로 / 1류>2류>3류 순으로 작성하였음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중로 2-22	중로 2-22	• 변경 • 일부구간 폭원 확대: B=15m→22m(구역 내) • 면적 : 2,849.8㎡ → 3,793.4㎡(구역 내)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의 폭원확대(B=22m)
중로 2-25	중로 2-25	• 변경 • 일부구간 폭원 확대: B=15m→19.5m(구역 내) • 면적 : - → 1,181.3㎡(구역 내)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의 폭원확대(B=19.5m)
소로 2-166	소로 1-A	• 변경 • 폭원 확대: B=8m→10m(구역) • 면적 : - → 414.0㎡(구역 내)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의 폭원확대(B=10m)
소로 2-168	소로 1-B	• 변경 • 연장 축소: L=240m→118m(갑122m) • 기점변경: 중3-35→호구포로 810번길 58 • 일부구간 폭원 확대: B=8m→10m(구역 내) • 면적 : 978.9㎡ → 144.3㎡(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의 폭원확대(B=10m)
소로 2-113	소로 2-113	• 변경 • 연장축소: L=147m→111m(갑136m) • 기점변경: 광2-7→소2-179 • 면적 : 2,429.7㎡ → 164.6㎡(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
소로 2-116	소로 2-116	• 변경 • 연장축소: L=161m→64m(갑97m) • 기점변경: 중2-25→구월동349-3 • 면적 : 528.4㎡ → 15.5㎡(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
소로 2-165	소로 2-165	• 변경 • 도로 선형 정형화 • 면적 : 73.3㎡ → 29.5㎡(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 및 효율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소로 2-169	소로 2-169	• 변경 • 연장 축소: L=177m→118m(갑59m) • 기점변경: 중3-35→복개서로 89번길 9 • 면적 : 476.8㎡ → -(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
소로 2-177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78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79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80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3-45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3-47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3-48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3-226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 관계기관 협의 2차의견 : 중로>소로 / 1류>2류>3류 순으로 작성하였음

2) 주차장(교통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변경	변경후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349-683 일원	183.0	감) 183.0	-	'01.10.08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1269 일원	876.3	감) 876.3	-	'02.09.30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349-57	119.0	감) 119.0	-	'01.10.08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349-535	147.0	감) 147.0	-	'01.10.08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1303-7	1,632.1	감) 1,632.1	-	'05.09.23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1259-18	453.0	감) 453.0	-	'25.08.14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1261-12 일원	931.7	감) 931.7	-	'25.08.14	-
신설	주차장	구월동 1305-2 일원	-	증) 5,429.5	5,429.5	-	무상 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주차장	• 신설(5,429.5㎡)	•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신설(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주차장	• 폐지(183.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876.3㎡)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119.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147.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1,632.1㎡)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453.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931.7㎡)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3) 공원(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모래내 공원	어린이 공원	구월동 1258-4	1,500.0	감)	1,500.0	-	-
폐지	-	모래마을 3호 공원	어린이 공원	구월동 349-654	405.0	감)	405.0	-	'01.10.08
폐지	-	모래마을 1호 공원	어린이 공원	구월동 1304-25	161.8	감)	161.8	-	'01.10.08
폐지	-	모래마을 2호 공원	어린이 공원	구월동 349-231	766.0	감)	766.0	-	'01.10.08
신설	-	공원	근린 공원	구월동 1258-4 일원	-	증)	14,512.7	14,512.7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 원	근린 공원	• 신설(14,512.7㎡)	•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및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공 원	어린이 공원	• 폐지(1,500.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	공 원	어린이 공원	• 폐지(405.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	공 원	어린이 공원	• 폐지(161.8㎡)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	공 원	어린이 공원	• 폐지(766.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4) 사회복지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주민 복지관	구월동 349-826 일원	497.0	감)	497.0	-	'02.10.28
신설	-	사회 복지시설	구월동 1305-7 일원	-	증)	1,535.1	-	무상귀속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사회복지시설	• 신설(1,535.1㎡)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관리청에 무상귀속)
폐지	사회복지시설	• 폐지(497.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폐지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 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비 고
			기 준	계 획	
부대· 복리 시설	경로당	획지 Ⅱ-1	500㎡+2㎡×계획세대수	258.30	-
	어린이놀이터	획지 Ⅱ-1		1,542.40	-
	어린이집	획지 Ⅱ-1		651.60	-
	주민운동시설	획지 Ⅱ-1		2,238.42	-
	작은도서관	획지 Ⅱ-1		216.00	-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Ⅱ-1		194.40	-
	근린생활시설	획지 Ⅱ-1	-	1,273.41	-
	관리사무소	획지 Ⅱ-1	10㎡+(세대수-50)×0.05㎡	223.29	-
	경비실	획지 Ⅱ-1		79.65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번호	면적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신규	구월349 재개발 구역	80,735.9	Ⅱ-1	52,831.5	구월동 산16-1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60.00 이하	300.00 이하	130.00 이하	-		
			Ⅱ-2	291.7	구월동 1258-1	종교시설	60.00 이하	250.00 이하	-	존치		
			Ⅱ-3	482.7	구월동 1259-15	종교시설	60.00 이하	250.00 이하	-	존치		
			Ⅱ-1	1,535.1	구월동 1305 일원	사회복지 시설	60.00 이하	250.00 이하	-	-		
			획지 번호	구분	계획내용							
			Ⅱ-1	공동주택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Ⅱ-1	사회 복지시설	허용용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Ⅱ-2	종교시설1	허용용도	·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Ⅱ-3	종교시설2	허용용도	·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획지 번호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환경선	개선	Ⅱ-1	공동주택 용지	폭 6m 지선	계방감 확보 및 법칙 기준 충족	「안전관리시설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른					
			Ⅱ-1	사회복지시설 용지	폭 3m 지선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사항			·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완화기준 적용						
구분	구역 면적 (㎡)	①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②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면적(㎡)	③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정비계획 수립 전 도시계획시설 면적(㎡)	정비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토지이용	80,735.9	53,605.9	3,899.5	1,038.1	22,192.4	27,130.0
① 공공시설등 제공·확보 후 면적 = 구역면적 - 정비계획 수립 후 도시계획시설 면적 = 80,735.9㎡ - 27,130.0㎡ = 53,605.9㎡ ②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면적(도로·공원·주차장) = 정비계획 수립 후 설치·조성 후 부지제공 도시계획시설 면적 - 정비계획 수립 전 설치·조성 후 부지제공 도시계획시설 면적 = 25,594.9㎡ - 21,695.4㎡ = 3,899.5㎡ ③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사회복지시설) = 정비계획 수립 후 부지제공 도시계획시설 면적 - 정비계획 수립 전 부지제공 도시계획시설 면적 = 1,535.1㎡ - 497.0㎡ = 1,038.1㎡						
구 분	내 용					
기준용적률 (210%)	●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기본 용적률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2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 = 230%					
허용용적률 (230%)	구분	항목	용적률 완화기준		비율	
	자연적·자연 친화적 주택건설	녹색건축물	녹색건축물 등급 우수 (3%p)		20%p (이내로 확보)	
		제로에너지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B 등급 (7%p)			
		친수형주택 건축물	친수형 주택 인증 우수 등급 (5%p)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참여	참여비율 (5%p)			
상한용적률 (250%)	구분		용적률 완화기준		대상시설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도로, 공원, 주차장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허용용적률 + (1.0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사회복지시설		
	구분		용적률 완화기준			
법적상한 초과용적률 (최대 300%)	허용용적률	● ① 230.00%				
	공공시설등 설치·조성하여 부지제공	● (1.5 × (3,899.5 / 53,605.9) × 210.00%) = ② 22.91%p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 (1.0 × (1,038.1 / 53,605.9) × 210.00%) = ③ 4.07%p				
	상한용적률	● ① 230.00% + ② 22.91%p + ③ 4.07%p = 256.98% ●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50.00% 확보				
	추가 용적률 (도정법 제66조)	● 해당 정비구역 총 면적의 2분의 1이상이 철도 또는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인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완화 ● 역세권 등의 용적률에 관한 특례 = 법적상한용적률(250%) × 120/100 = 300%				
● 추가용적률 = 법적상한초과용적률(300%) -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250%) = 50% ● 추가용적률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건설하여 인수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에 공급						

계획용적률 (300%)	• 허용용적률(230%) : 기준용적률(2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p) • 상한용적률(250%) : 허용용적률(230%)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 및 설치·조성(20%p) • 법적상한초과용적률(300%) : 상한용적률(250%) × 1.2
-----------------	--

* 사업시행자(조합)가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완화항목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 보전 계획	자연 환경	• 절성도의 균형고려, 지형변화의 최소화 • 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확보	—
	생활 환경	• 도시가스등 청정연료(LNG)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생태 환경	• 주택단지내 주차장 지하화를 통해 풍부한 조경과 녹화율을 확보하여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과 도시생태환경 확보	—
	수질· 폐기물	• 단지조성시 투수성 포장비율을 높여 우수에 의한 수질오염 저하 • 기존 건축물 철거시 폐기물을 재활용 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사업 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나. 재난방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 방지 계획	지진· 풍수해	•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부합하도록 내력벽 및 주요 구조부 강화 • 기존 도로 등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연접 기반시설은 내진성능평가를 통하여 단계적인 보강방안을 마련하며, 신설 기반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조성계획 수립 • 공원 조성, 생태면적률 증대 등 녹지공간의 확충과 투수성 포장, 친환경조경 사용 권장으로 우수 유출 저감 및 최소화	—
	화재 안전 대책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화계획 수립 • 건축물 신축시 외장재 불연성능 강화, 피난경로 확보	—
	교통 안전 대책	• 주차장 지하화 및 진입로 보차분리를 통해 보행동선의 안전성 확보 • 운전자들의 시야확보, 차량 대기공간, 주차 진입동선을 고려한 주차 진입로 조성 • 소방차·특수자동차 등의 진입공간 및 상시 주차가 가능한 공간 확보 • 스쿨존(School-Zone) 설치 및 보행안전구역(Barrier-Free) 구현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범 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흥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 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절대 보호구역	•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폐기물처리시설, 청소년 유헤업소, 몽안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화약류 제조소, 격리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사행 행위영업시설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21조
	교육환경 보호구역	• 설정기준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상대 보호구역	• 폐기물처리시설, 청소년 유헤업소, 몽안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 화약류 제조소, 격리소,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등은 교육감 혹은 교육감이 위임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 지정기준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또는 5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0. 세입자 주거대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 안정화 및 이주대책 수립
-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자의 경우,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고려하여 재정착 유도
- 재정착을 요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 향후 사업시행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주거 이전비 등의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분쟁 발생 억제

구 분	내 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자	• 1순위 :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3개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격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
	• 2순위 :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공급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취득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 3순위 : 해당 정비구역의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4순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 무주택세대주
동순위일 시 공급기준	•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다만, 「건장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를 포함한다) 셋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와 구청장등이 책정한 소년소녀가장세대(둘 이상의 가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1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12.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 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 하려는 경우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80,735.9	-	80,735.9	100.0	-

2) 용도지구(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

1) 도로(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2	22	15	국지 도로	1,205	광3-7	대1-14	일반 도로	—	1970.02.09. (간설1970-54호)	—
변경	중로	2	22	15~22 (대표 폭원 15)	국지 도로	1,205	광3-7	대1-14	일반 도로	—	1970.02.09. (간설1970-54호)	폭원 변경
기정	중로	2	25	15	국지 도로	1,205	대3-11	중2-21	일반 도로	—	1970.02.09. (간설1970-54호)	—
변경	중로	2	25	15 (대표 폭원 15)	국지 도로	1,205	대3-11	중2-21	일반 도로	—	1970.02.09. (간설1970-54호)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166	8	국지 도로	57	중3-35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변경	소로	1	A	10	국지 도로	57	중3-35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168	8	국지 도로	240	중3-35	소2-172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변경	소로	1	B	8~10 (대표 폭원 10)	국지 도로	118	호구포로 810번길 58	소2-172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연장 축소·폭원 변경
기정	소로	2	113	8	국지 도로	147	광2-7	중3-28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변경	소로	2	113	8	국지 도로	30	소2-179	중3-28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연장 축소·신형 변경
기정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161	중2-25	중3-28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변경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64	구월동 349-32	중3-28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연장 축소
기정	소로	2	165	8	국지 도로	57	중3-35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변경	소로	2	165	8	국지 도로	57	중3-35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신형 변경
기정	소로	2	169	8	국지 도로	177	중3-35	소2-172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변경	소로	2	169	8	국지 도로	118	북계사로 89번길 9	소2-172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연장 축소
폐지	소로	2	177	8	국지 도로	259	소2-168	소2-179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폐지	소로	2	178	8	국지 도로	36	중2-22	소2-177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폐지	소로	2	179	8	국지 도로	107	중2-22	제척지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폐지	소로	2	180	8	국지 도로	62	중2-22	소2-181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폐지	소로	3	45	6	국지 도로	106	구월 349-753	구월 349-64	일반 도로	—	1994-09-15 (인천1994-154호)	—
폐지	소로	3	47	6	국지 도로	165	구월 349-771	구월 349-64	일반 도로	—	1994-09-15 (인천1994-154호)	—
폐지	소로	3	48	6	국지 도로	35	소2-89	구월 산16-23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폐지	소로	3	226	6	국지 도로	180	중2-64	소2-225	일반 도로	—	1981.03.13. (간설1981-73호)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중로 2-22	중로 2-22	• 변경 • 일부구간 폭원 확대: B=15m→22m(구역 내) • 면적 : 2,849.8㎡ → 3,793.4㎡(구역 내)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의 폭원확대(B=22m)
중로 2-25	중로 2-25	• 변경 • 일부구간 폭원 확대: B=15m→19.5m(구역 내) • 면적 : — → 1,181.3㎡(구역 내)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의 폭원확대(B=19.5m)
소로 2-166	소로 1-A	• 변경 • 폭원 확대: B=8m→10m(구역) • 면적 : — → 414.0㎡(구역 내)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의 폭원확대(B=10m)
소로 2-168	소로 1-B	• 변경 • 연장 축소: L=240m→118m(감122m) • 기점변경: 중3-35→호구포로 810번길 58 • 일부구간 폭원 확대: B=8m→10m(구역 내) • 면적 : 978.9㎡ → 144.3㎡(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 •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일부구간의 폭원확대(B=10m)
소로 2-113	소로 2-113	• 변경 • 연장축소: L=147m→11m(감136m) • 기점변경: 광2-7→소2-179 • 면적 : 2,429.7㎡ → 164.6㎡(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연장축소 및 기점 변경

소로 2-116	소로 2-116	• 변경 • 연장측소: L=161m→64m(감97m) • 기점변경: 중2-25→구월동349-3 • 면적: 528.4㎡ → 15.5㎡(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연장측소 및 기점 변경
소로 2-165	소로 2-165	• 변경 • 도로 선형 정형화 • 면적: 73.3㎡ → 29.5㎡(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 및 효율적·계획적 관리를 위한 도로 선형 변경
소로 2-169	소로 2-169	• 변경 • 연장측소: L=177m→118m(감59m) • 기점변경: 중3-35→북개서로 89번길 9 • 면적: 476.8㎡ → -(구역 내)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연장측소 및 기점 변경
소로 2-177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78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79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2-180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3-45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3-47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3-48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소로 3-226	-	• 도로 폐지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노선 폐지

2) 주차장(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349-683 일원	183.0	감) 183.0	-	'01.10.08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1269 일원	876.3	감) 876.3	-	'02.09.30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349-57	119.0	감) 119.0	-	'01.10.08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349-535	147.0	감) 147.0	-	'01.10.08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1303-7	1,632.1	감) 1,632.1	-	'05.09.23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1259-18	453.0	감) 453.0	-	'25.08.14	-
폐지	노의 주차장	구월동 1261-12 일원	931.7	감) 931.7	-	'25.08.14	-
신설	주차장	구월동 1305-2 일원	-	증) 5,429.5	5,429.5	-	무상 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주차장	• 신설(5,429.5㎡)	• 지역주민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차장 신설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주차장	• 폐지(183.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876.3㎡)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119.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147.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1,632.1㎡)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453.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	주차장	• 폐지(931.7㎡)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주차장 폐지

3) 공원(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모래내 공원	어린이 공원	구월동 1258-4	1,500.0	감) 1,500.0	-	-	-
폐지	-	모래마을 3호 공원	어린이 공원	구월동 349-654	405.0	감) 405.0	-	'01.10.08	-
폐지	-	모래마을 1호 공원	어린이 공원	구월동 1304-25	161.8	감) 161.8	-	'01.10.08	-
폐지	-	모래마을 2호 공원	어린이 공원	구월동 349-231	766.0	감) 766.0	-	'01.10.08	-
신설	-	공원	근린 공원	구월동 1258-4 일원	-	증) 14,512.7	14,512.7	-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 원	근린 공원	• 신설(14,512.7㎡)	• 지역주민의 휴게·휴식 및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린공원 신설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	공 원	어린이 공원	• 폐지(1,500.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	공 원	어린이 공원	• 폐지(405.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	공 원	어린이 공원	• 폐지(161.8㎡)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	공 원	어린이 공원	• 폐지(766.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공원 폐지

4) 사회복지시설(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주민 복지관	구월동 349-826 일원	497.0	감) 497.0	-	'02.10.28	-
신설	-	사회 복지시설	구월동 1305-7 일원	-	증) 1,535.1	1,535.1	-	무상귀속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사회복지시설	• 신설(1,535.1㎡)	•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관리청에 무상귀속)
폐지	사회복지시설	• 폐지(497.0㎡)	•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폐지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1	㉠	53,605.9	1	구월동 산16-1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2	구월동 1258-1	종교시설 존치
㉠-3	㉡	6,964.6	3	구월동 1259-15	종교시설 존치
㉡-1			1	구월동 1305 일원	사회복지시설
㉡-2	㉡	6,964.6	2	구월동 1305-22 일원	노외주차장

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 또는 최저한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㉑-1	구월동, 산16-1 일원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00% 이하
			• 300.00% 이하
			[용적률 완화기준]
			• 기존용적률 : 210.00% 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존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 230.00% 이하
			- 도시건축도량 우측 : 3%
			- 제도에너지 건축물 인종 ZEB 등급 : 7%
㉑-2	구월동, 1258-1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률	• 250.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 -
			•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00% 이하
			• 250.00% 이하
			- / -
㉑-3	구월동, 1259-15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00% 이하
		용적률	• 250.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 -
			•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60.00% 이하
			• 250.00% 이하
			- / -

마.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 위치 : 단지 내 중로3-160호선~중로2-22호선 및 근린공원 연결구간 • 폭원은 5m 이상 확보하며 위치 및 선형은 조정할 수 있음 • 단지 내·외간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설치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자 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차량의 잔·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불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정비구역율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없음)

16.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해당없음)

1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건설·공급
---------------	--

1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지	개수	철거	
합 계		-	332	2	-	330	-

19.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참조

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획지 번호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㉑-1	공동주택 용지	폭 6m 지정	개방감 확보 및 법적 기준 충족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름
	㉑-1	사회복지시설 용지	폭 3m 지정		

2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나. 재난방지계획” 참조

2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용적률 (%)	세대수 (세대)	사업추진단계	비 고
백운주택 1구역	간석동 900-138번지일원	32,366.5	249.87%	746세대 (2025.03.05.)	준공	-
간석성락 아파트구역	간석동 514번지일원	20,682.9	249.85%	469세대 (2025.11.20.)	준공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구월동 70-16번지일원	55,771.3	236.51%	1,115세대 (2024.10.08.)	이전교시	-

2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자연적 감시	• 입주민, 주변인에 의한 가시권을 확대화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시설물, 조경 등 배치 • 지역 내 파출소, 지구대와 연계한 순찰강화 및 순찰초소 설치
자연적 접근통제	• 비인가자의 진출입 차단을 통한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 통제 -단지/아파트 출입문에 보안카메라 및 잠금장치 설치 -지하주차장내 밝은 조명 및 감시카메라 설치
영역성 강화	•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주민 안정성 제고 및 제3자의 범죄 예방 -보도와 차도의 단차조성 및 안전랜스 설치 등
활동의 활성화	•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주민들의 활발한 사용 유도를 통해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여 범죄위험 감소 및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 -커뮤니티 공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벤치, 조명 등)

2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획자번호	위치	면적(㎡)	
㉑-1	㉑	53,605.9	1	구월동 산16-1 일원	52,83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㉑-2			2	구월동 1258-1	291.7	종교시설 존지
㉑-3			3	구월동 1259-15	482.7	종교시설 존지
㉑-1	㉑	6,964.6	1	구월동 1305 일원	1,535.1	사회복지시설
㉑-2			2	구월동 1305-22 일원	5,429.5	노의주차장

25.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건설 • 공공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	--

2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7.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8.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개발 사업 승인 전 세부적인 협의 진행 예정

29.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해당없음)

30.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교통처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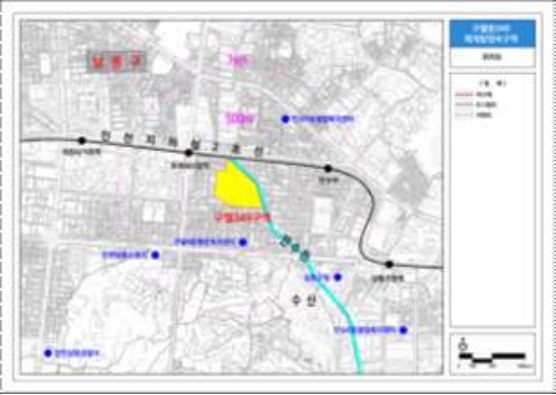
구 분	지점	개 설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동측 구월말로 확장 및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 L=160m, B=22.0m(왕복 5차로) - 가속차로 L=60m B=3.0m, 감속차로 L=55m B=3.0m
	㉡	• 사업지 남측 구월남로 확장 및 진출입 완화차로 설치 - L=270m, B=19.5m(왕복 4차로) - 가속차로 L=25m B=3.0m, 감속차로 L=130m B=3.0m
	㉢	• 사업지 서측(호구포로 790번길~호구포로 810번길) 확장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 L=270m, B=10.0m(왕복 2차로)
진출입 동선	-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운영방안 수립(총 2개소, 비신호교차로) - 동측 진출입구, 남측 부출입구
	-	• 사업지 주변 교차로 최적 신호운영방안 제시 : 3개소
	㉣	• 동측 진출입구 운영방안 수립 - 왕복 4차로(진입 2차로, 진출 2차로)
	㉤	• 남측 부출입구 운영방안 수립 - 왕복 2차로(진입 1차로, 진출 1차로)
	-	• 차량 진출입부 회차공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정차공간 설치(2개소) - 동측 진출입구 : 1면 - 남측 부출입구 : 1면
	-	• 차량 진출입구 회전반경 R=6.0m 확보

보행 및 자전거	-	• 보행공간 단절구간 횡단보도 설치 • 자전거보판소 설치 : 400대 - 법정주차대수의 21.2%(20% 이상)
주 차	-	• 법정주차대수 : 1,886대 • 주차수요대수 : 2,115대(2034년) • 계획주차대수 : 2,502대(공동주택 2,466대, 근생시설 36대) - 법정주차대수의 132.7%, 주차수요의 118.3%, 세대당 1.31대 - 일반주차 : 1,168대(계획주차의 46.7%) - 확장형주차 : 1,026대(계획주차의 41.0%) - 장애인주차 : 83대(법정주차의 3.3%) - 경형주차 : 225대(계획주차의 9.0%) - 전기차충전시설 : 126대(계획주차의 5.0%)
교통안 전 및 기 타	-	•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 주차장 램프 진출입구 경고등 설치 • 차량 상충지점 반사경 설치 • 지하주차장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이미지원프 설치 • 사업지내 비상차량 동선계획 수립

[교통처리계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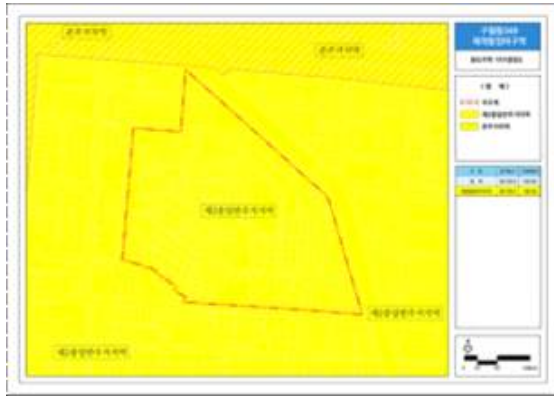
[위치도]



[정비구역결정도]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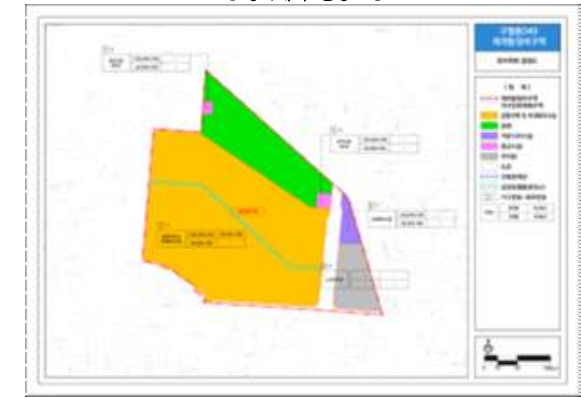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정비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



만수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

만수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 번호	3263
제출년월일 : 2026년 7월 1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인천시 공고 제2022-3592호(2022. 10. 4.), 2023년 1차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의한 후보지 선정(2023. 6. 28.)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진행 중인 만수동 944-3 일원 “만수2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을 위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 규정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추진현황	
○ 2022. 10. 4. :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2-3592호)	
○ 2023. 01. : 재개발 사전검토 제안(주민→남동구)	
○ 2023. 06. 28. :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 선정(인천시)	
○ 2024. 09. 04. :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	
○ 2025. 04. 12. : 사전 주민설명회 실시	
○ 2025. 05. ~ 2025. 11. : 주민 동의서 장구	
○ 2025. 10. ~ 2026. 03. 토지등소유자 추정분담금 검증(한국부동산원)	
○ 2026. 04. : 추정분담금 및 동의철회서 발송	
○ 2026. 05. : 정비계획(안) 관련부서(기관) 협의	

□ 주요내용	
○ 토지이용구상	
- 지형여건과 도로 현황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 기존 도로 폐지로 인한 보행 단절에 대응하기 위해 단지 내 공공보행통로 조성	
- 만수역세권 입지 특성을 고려한 공원 조성 및 보행동선계획 수립	
- 기반시설의 적정 배치를 통한 이용 편의 증진 및 이용 효율성 극대화	
○ 정비구역 일반현황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로 9,763.8㎡(도시계획시설 9,763.8㎡)	
- 토지현황	
: 국공유지(17필지, 10,801.3㎡), 사유지(218필지, 47,586.7㎡)	
- 건축물현황	
: 유희가 221동(주거용 185동, 비주거용 11동, 복합용 25동)	
○ 거주자 및 권리자 현황	
- 거주가구	
: 1,404세대(건축물대장 기준, 2024)	
- 권리자(토지등소유자)	
: 1,342인(소유자 명부 기준, 2026)	
○ 주민 동의서 장구 결과	
- 동의율(68.5%), 동의면적 (70.4%)	
※ 동의율 기준: 토지등소유자 수 5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 향후 일정계획	
○ 2026. 06. ~ 2026. 07. : 주민 공람	
○ 2026. 07. 07. : 주민설명회	
○ 2026. 09. ~ 2026. 10. :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인천광역시)	
○ 2026. 11. : 정비구역 지정 고시(인천광역시)	
□ 참고사항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첨부1]	

■ 첨부1.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만수2구역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지정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규	재개발사업	만수2 재개발구역	남동구 만수동 944-3 일원	58,388	-

3.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구분	총 수입 추정 (원)	총 지출 추정 (원)	종전자산총액 추정 (원)	추 정 비례율	비 고
내용	741,152,133,360	575,188,592,910	193,972,061,079	85.6%	한국 부동산원

※ 금회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는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토지이용계획

명 칭		면 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8,388	100.0	-
택지	소 계	48,624	83.3	-
	공동주택/부대복리시설	48,124	82.4	-
	종 교 시 설	500	0.9	-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소 계	9,764	16.7	-
	공 원	5,012	8.6	-
	주 차 장	3,542	6.0	-
도 로		1,210	2.1	-

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 도로(교통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등급	구분	번호	폭원(m)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중로	3	162	12	일반도로	687	광3-7	대2-31	일반도로	—	1981.03.13.	
변경	중로	3	162	12~20	일반도로	687	광3-7	대2-31	일반도로	—	1981.03.13.	폭원변경
신설	중로	3	A	12	일반도로	205	중1-162	중2-21	일반도로	—	—	
폐지	소로	2	192	8	국지도로	284	소2-193	소2-193	일반도로	—	1981.03.13.	
폐지	소로	2	193	8	국지도로	470	중2-25	중3-40	일반도로	—	1981.03.13.	
폐지	소로	2	194	8	국지도로	156	중2-21	중3-40	일반도로	—	1981.03.13.	
폐지	소로	2	195	8	국지도로	164	중2-21	중3-40	일반도로	—	1981.03.13.	
폐지	소로	2	196	8	국지도로	125	중3-40	소2-193	일반도로	—	1981.03.13.	
폐지	소로	2	197	8	국지도로	125	중3-40	소2-193	일반도로	—	1981.03.13.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조서 및 고시 참조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62	중로3-162	• 도로폭원 변경 - 폭원 : 12m → 12~20m	•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중로3-A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205m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신설
소로2-192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3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4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5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6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7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2) 주차장(교통시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노외주차장	만수동 947-17 일원	—	중) 1,210	1,210	—	무상귀속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1	주차장	• 신설 - 면적 : 1,210 ㎡	• 정비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공원(공간시설)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어린이공원	만수동 946-8 일원	—	중) 5,012	5,012	—	무상귀속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결정내용	결정사유
—	공원	어린이공원	• 신설 - 면적 : 5,012 ㎡	• 정비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구분	시설의종류	위 치	면적(㎡)		비고
			기준	계획	
부대·복리시설	경로당	획지 Ⅱ-1		215.0	—
	어린이놀이터	획지 Ⅱ-1		2,132.6	—
	다함께돌봄센터	획지 Ⅱ-1	500㎡+2㎡×계획세대수	100.0	—
	주민운동시설	획지 Ⅱ-1		3,000.0	—
	작은도서관	획지 Ⅱ-1		304.5	—
	근린생활시설	획지 Ⅱ-1	—	1,901.4	—
	관리사무소	획지 Ⅱ-1	10㎡+(세대수-50)×0.05㎡	249.9	—
	경비실	획지 Ⅱ-1		39.0	—

7.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		획지 번호	면적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신규	만수2 재개발 구역	58,388	Ⅱ-1		48,124	만수동 944-3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60.00 이하	300.00 이하	130.00 이하	-		
			Ⅱ-2		500	만수동 946-30 일원	종교시설	60.00 이하	250.00 이하	-	-		
			획지 번호	구분	계획내용								
			Ⅱ-1	공동 주택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Ⅱ-2	종교 시설	허용용도	• 종교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용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퍼센트 이상을 85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주택으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획지 번호	위치	계획내 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Ⅱ-1	공동주택 용지	폭 6m 지정	개발권 확보 및 법적 기준 충족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른					
				Ⅱ-2	종교시설 용지	폭 3m 지정							
공공임대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사항			•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 • 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용은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퍼센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 제66조제3항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함으로써 증가된 세대수, 연면적 및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완화기준 적용	- 기준용적률(210%) +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20%p) + 상한용적률(0%p) = 230% (1) 완화용적률 인센티브(20%p) ※ 제시한 완화항목에서 20% 이내 계획 - 녹색건축물(6%p) - 제로에너지 건축물(10%p) - 전기차 충전시설 추가 설치(3%p) - 지능형 건축물(6%p) - 공공보행도로 설치(3%p) - 지역업체 참여(10%p) (2) 상한용적률(0%p) - 허용용적률 + $[1.0 \times (\text{①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 \text{②공공시설 등 부지제공·확보 후 면적}) \times (\text{기준용적률})]$ - 230.00% + $[1.0 \times (0 / 48,624) \times 210\%] = 230.00\%$ ①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면적 = 정비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 면적 - 정비계획 수립 전 기반시설 면적 = 9,764㎡ - 9,764㎡ = 0㎡ ②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확보 후 면적 = 구역면적 - 정비계획 수립 후 기반시설 면적 = 588,388㎡ - 9,764㎡ = 48,624㎡
	- 정비계획용적률(230%) + 공공임대주택 조성·공급(20%p) = 250% - 초과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의 1/2을 국민규모주택 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공급하여 확보 - $\frac{(250\% - 230\%)}{2} = 10\%$ 공공임대주택 공급
	- 법적상한용적률(250%)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조성·공급(50%p) = 300% - 대상지의 80% 이상이 역세권(도시철도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에 위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만큼 완화 - 용적률(완화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의 100분의 50만큼 국민주택규모 공공임대주택 조성·공급 - $\frac{(300\% - 250\%)}{2} = 25\%$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업시행자(조합)가 향후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완화항목 및 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환경보전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환경보전계획	- 동·식물상 • 복측에 근린공원을 신설하여 주변 식생과 어울리는 조경식재 및 녹지확보 - 지형·지질 • 기존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정지공사를 실시토록 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할 계획 • 사면 발생시 경제성,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지형·지질, 기후조건과 보호공 효과에 대한 최적공법 선정하여 시행할 계획임 •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 강우에 의한 토사유출을 방지 할 계획 - 대기질 • 지구내 난방연료를 청정연료 사용 • 공원·녹지 최대한 확보, 대기질 정화수중 선정하여 식재 • 청정연료인 LNG사용을 의무화하고 교통 수요의 억제 또는 분산의 효과를 위하여는 차량운행을 최소화, 차량10부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차량 통제 계획 - 수 질 • 급수계획 : 기배설되어 있는 상수관로를 통해 대상지 단지내로 인입관로를 이용하여 공급 • 오수처리 : 기배설되어 기존 하수관거에 연결하여 연계처리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등에 의거 저감대책 마련	-

나. 재난방지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재난방지계획	- 수 재해 •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지 진 • 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 - 화 재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서감방안 도입 • 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동선체계 구축 • 건축법의 발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 준수 - 교통재해 • 진출입시 가감속차선 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 • 지상 및 지하주차장 램프 출입구에 출차경고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상충을 미연에 방지 •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검문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적 용 범 위	계 획 내 용	비 고
용도제한을 통한 교육환경 보호	정비구역 전체	• 불허용도계획을 통한 유종업소(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등 교육환경 위해 시설 입지 금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절대 보호 구역	• 설정기준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폐기물처리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불안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화약류 제조소, 격리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사행 행위영업시설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시행령 제21조
	교육환경 보호구역	• 설정기준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상대 보호 구역	• 폐기물처리시설, 청소년 유해업소, 불안시설, 소음·진동 배출시설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용도 및 시설 입지 금지 • 화약류 제조소, 격리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시설, 사행행위영업시설 등은 교육감 혹은 교육감이 위임한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가능	
통학권 보행안전 대책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운영	• 지정기준 -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또는 5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 신호기·안전표지 설치, 도로부속물설치, 노상주차장 설치 금지 등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10. 세입자 주거대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세입자 주거 안정화 및 이주대책 수립
- 재정착을 희망하는 세입자의 경우, 계획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고려하여 재정착 유도
- 재정착을 요하지 않은 세입자의 경우, 향후 사업시행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주거 이전비 등의 적절한 보상을 통하여 분쟁 발생 억제

구 분	내 용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자	• 1순위 :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공람공고일 3개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일)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최소분양주택가격보다 권리가액이 적은 자 중 해당 정비사업에 따라 무주택자가 되는 자 • 2순위 : 해당 정비구역 안의 주택공급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자(철거되는 주택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 한한다) • 3순위 : 해당 정비구역의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다른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 • 4순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에 따라 주거지를 상실하게 된 무주택세대주
동순위일 시 공급기준	• 같은 순위 안에서는 해당 정비구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른 가족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입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입양자를 포함한다) 셋 이상을 양육하는 세대와 구청장등이 책정한 소년소녀가장세대(둘 이상의 가족이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만 적용한다)를 최우선 순위에 둔다.

11.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12. 정비사업을 통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같은 조 제 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위탁하려는 경우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가.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중·감	변경		
합 계		58,388	—	58,38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58,340	—	58,340	99.9
	준주거지역	48	—	48	0.1

2) 용도지구(해당없음)

나.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계획

1) 도로(교통시설)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 조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62	12	집산도로	687	광3-7	대2-31	일반도로	—	1981.03.13. (건설1981-73호)	
변경	중로	3	162	12~20	집산도로	687	광3-7	대2-31	일반도로		1981.03.13. (건설1981-73호)	복원 변경
신설	중로	3	A	12	집산도로	205	중1-162	중2-21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192	8	국지도로	284	소2-193	소2-193	일반도로		1981.03.13. (건설1981-73호)	
폐지	소로	2	193	8	국지도로	470	중2-25	중3-40	일반도로		1981.03.13. (건설1981-73호)	
폐지	소로	2	194	8	국지도로	156	중2-21	중3-40	일반도로		1981.03.13. (건설1981-73호)	
폐지	소로	2	195	8	국지도로	164	중2-21	중3-40	일반도로		1981.03.13. (건설1981-73호)	
폐지	소로	2	196	8	국지도로	125	중3-40	소2-193	일반도로		1981.03.13. (건설1981-73호)	
폐지	소로	2	197	8	국지도로	125	중3-40	소2-193	일반도로		1981.03.13. (건설1981-73호)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조서 및 고시 참조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162	중로3-162	• 도로폭원 변경 － 폭원 : 12m → 12~20m	• 정비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일부구간 도로 확폭
－	중로3-A	• 도로 신설 － 폭원 : 12m － 연장 : 205m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신설
소로2-192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3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4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5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6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소로2-197	－	• 폐지	• 정비사업으로 인한 도로 폐지

2) 주차장(교통시설)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노외 주차장	만수동 947-17 일원	－	증) 1,210	1,210	－	무상 귀속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1	주차장	• 신설 － 면적 : 1,210 ㎡	• 정비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3) 공원(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부	위 치	면 적(㎡)			최 조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공원	어린이 공원	만수동 946-8 일원	－	증) 5,012	5,012	－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부	결 정 내 용	결 정 사 유
－	공 원	어린이 공원	• 신설 － 면적 : 5,012 ㎡	• 정비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또는 계획적인 개발·정비를 위하여 구획된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Ⅱ-1	Ⅱ	48,624	1	만수동 944-3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Ⅱ-2			2	만수동 946-30일원	종교시설

라.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견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Ⅱ-1	만수동 944-3 일원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견폐율	• 60.00% 이하
		용적률	• 300.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130m 이하 / 건축한계선 6m
Ⅱ-2	만수동 946-30 일원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견폐율	• 60.00% 이하
		용적률	• 250.00% 이하
		높 이 / 건축선	• - / 건축한계선 3m

마. 공공보행통로에 관한 사항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공보행통로	• 위치 : 구월로336번길~하촌사로 연결구간 • 폭원은 5m 이상 확보하며 위치 및 선형은 조정할 수 있음 • 단지 내·외간 보행동선 확보를 위하여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설치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음, 단 차량의 진출입을 불허하기 위하여 블라드, 돌의자 등의 설치와 가로수 식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14.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5.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없음)

16.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법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예정된 자(해당없음)

17.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건설·공급
---------------	--

18.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	명칭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지	개선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합 계		－	221	－	－	221	－	－

19.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5.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참조

20.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획지 번호	위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고
건축 한계선	Ⅱ-1	공동주택 용지	폭 6m 지정	개방감 확보 및 법적 기준 충족	『인천광역시 건축조례』 제27조에 따름
	Ⅱ-2	종교시설 용지	폭 3m 지정		

2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

-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나. 재난방지계획” 참조

22.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구역명	위 치	구역면적 (㎡)	용적률 (%)	세대수 (세대)	사업추진단계	비 고
백운주택 1구역	간석동 900-138번지일원	32,366.5	249.87%	746세대	준공 (2025.03.05.)	－
간석성타 아파트구역	간석동 514번지일원	20,682.9	249.85%	469세대	준공 (2025.11.20.)	－
간석초교주변 다복마을구역	구월동 70-16번지일원	55,771.3	236.51%	1,115세대	이전고시 (2024.10.08.)	－

23.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	내 용
기본방향	•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
조경 및 식재	• 단지 내부 정원은 낮은 교목 식재하여 시야 확보 • 담장 대신 조경 및 식재를 조성할 경우 수목사이로 통행이 어렵도록 밀식
조명	• 출입구조명은 출입구와 출입구 주변에 연속적으로 설치 • 지상주차장, 정원은 조도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 확보
자연적 접근 통제	• 주 출입구에는 출입차단기 및 CCTV 등의 방범 장치를 설치 • 단지 외곽으로는 울타리나 펜스를 설치하여 단지 내 출입을 통제
영역성 강화	• 각 동 앞에는 정원을 설치하고 펜스나 울타리를 사용하여 공간·사적 공간을 강화
아파트 주출 입구	• 단지 출입구는 영역의 위계가 명확하도록 계획 • 출입구는 자연감시가 쉬운 곳에 설치 • 자연감시가 낮고 활동 인자 유도에 한계가 있는 경우 CCTV 설치
아파트 주동 출입구	•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 • 각 주동의 출입구로 들어가는 통로 주변 낮은 관목을 설치 • 주동 출입문은 안전유리, 방범필름, 충격센서 등을 설치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변공간에서 감시가 될 수 있는 밝고 개방된 공간에 설치 • 단지 내 주 보행로와 연계하여 시설물을 설치 • 자연스러운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람 통행이 많은 장소에 배치
경비실	•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 • 아파트단지 출입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 • 경비실에 고립지역에 대한 방범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경비실이 없는 고립 또는 사각지대에는 CCTV를 설치
주차장	• 주차장 입구는 도로에서 명확히 보이는 곳에 설치 • 차로에는 이동방향과 경로 및 진출입구 등을 바닥에 반드시 표시

24.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Ⅱ-1	Ⅱ	48,624	1	만수동 944-3일원	48,124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Ⅱ-2			2	만수동 946-30일원	500	종교시설 존치

25.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공공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이하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
---------------------	--

26.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7. 무상 양여된 국·공유지의 사용·처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28.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 전 세부적인 협의 진행 예정

29.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
동체 활성화 방안(해당없음)

30.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가. 교통처리계획

구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 서측 구월로336번길 확장 및 차로운영계획 수립 - L=340.0m : B=15.0m→20.0m(왕복 4차로)
	-	• 사업지 진출입교차로 운영방안 수립(총 3개소, 비신호교차로) - 서측 주출입구, 동측 부출입구, 남측 근생시설 출입구
	-	• 사업지 주변 교차로 회차 신호운영방안 제시 : 4개소
진출입 동선	㉡	• 서측 주출입구 운영방안 수립 - 왕복 4차로(진입 2차로, 진출 2차로)
	㉢	• 동측 부출입구 운영방안 수립 - 왕복 4차로(진입 2차로, 진출 2차로)
	㉣	• 남측 근생시설 출입구 운영방안 수립 - 왕복 2차로(진입 1차로, 진출 1차로)
	-	• 차랑 진출입부 회차공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정차공간 설치(2개소) - 서측 주출입구 : 1면 - 동측 부출입구 : 1면
	-	• 차랑 진출입부 회전반경 R=6.0~10.0m 확보
보행 및 자전거	-	• 보행공간 단원구간 횡단보도 설치
	-	• 자전거보관소 설치 : 340대 - 법정주차대수의 20.4%(20% 이상)
주 차	-	• 법정주차대수 : 1,664대
	-	• 주차수요대수 : 1,809대(2031년)
	-	• 계획주차대수 : 2,166대 (공동주택 2,150대, 근생시설 16대) - 법정주차대수의 130.2%, 주차수요의 119.7%, 세대당 1.3대 - 일반주차 : 962대(계획주차의 44.4%) - 확장형주차 : 933대(계획주차의 43.1%) - 장애인주차 : 76대(계획주차의 3.5%) - 경형주차 : 195대(계획주차의 9.0%) - 전기차충전시설 : 110대(계획주차의 5.1%)
	-	• 주차안내표지판 설치
	-	• 보행자보호울타리 설치
교통안전 및 기 타	-	• 주차장 램프 진출입구 경교동 설치
	-	• 차랑 상충지점 반사경 설치
	-	• 지하주차장 차량속도 저감을 위한 이미지헵프 설치
	-	• 사업지내 비상차량 동선계획 수립

■ 교통처리계획도



[위치도]



[정비구역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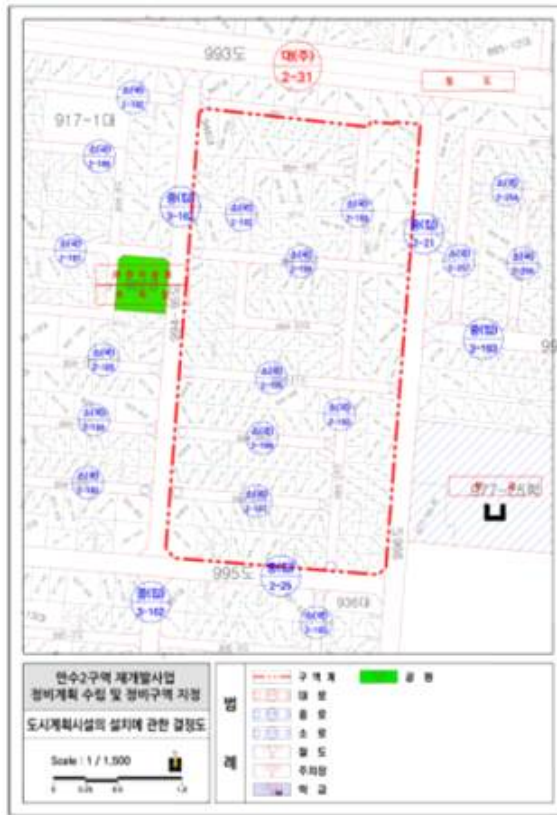
[용도지역·지구결정도(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도(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변경)]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